원주기업도시 2-1블록 EG the1 공동주택 모집공고

■ 이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18.01.25 입니다.(청약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공급면적 (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되어있으며, 본 주택에 대한 신청자격 등 판단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조건은 만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 본 아파트는 개정된 주택청약제도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되오니 참고하셔서 청약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이 주택은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이며,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점수로 계산하여 당첨자를 선정하는 '청약가점제'가 적용됩니다.(단, 이 주택은 2016.08.1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2항의 주택형 85㎡이하 주택으로 40%만 가점제가 적용되며 60%는 추첨제로 적용됩니다.) ■ 이 주택은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접수(인터넷, 은행창구 등)시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기재)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본인의 신청자격(가산점수, 신청순위, 당해지역여부, 주택소유여부 등)을 사전에 정확하게 파악하여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금융결제원(www.apt2you.com)에서 운영하는 "인터넷청약 가상체험관", 국민은행(www.kbstar.com)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청약신청 안내"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2순위 청약은 '인터넷 청약'으로 접수가 가능하고, 인터넷 청약을 위해서는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 발급, 거래은행에 '2순위 청약신청금'을 미리 예치하여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에 의해 당첨자 선정 및 동 · 호수 배정(추첨)은 금융결제원에서 실시합니다.[단,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은 사업주체가 담당하며, 기업도시 종사자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업무는 한국주택협회가 담당합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원주시)은 「주택법」 제63조 및 제 63조의 2에 의한 비투기 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으로서,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1주택이상 소유하신분도 청약 1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 ■ 이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에 의거하며 지역 제한 없이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동일 순위내 경쟁이 있을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 제3항에 의거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8.01.25.)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원주시) 거주자가 우선합니다. ■ 청약신청자격별 청약신청일정이 다르므로,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청약신청일정 등을 확인하시고, 해당 순위 접수일에 접수하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고령자와 장애인 및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2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자,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 또는 세대에 속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신청(특별 및 일반공급)시 최하층의 주택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층을 우선 배정하오니 청약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 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분양 가격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가격보다 높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단, 신청자가 많은 경우 다른 층을 배정받을 수 있고, 적은 경우에는 미신청자(최하층 우선배정 신청 비대상자 포함)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전매금지 및 재당첨 제한기간(전매금지 및 재당첨제한 등의 사항은 청약시점의 관련법규의 적용을 받으며, 향후 관계법규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이 주택은 수도권 외 민간택지에 공급되는 「주택법」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가상한제 미적용주택으로 전매제한이 없습니다. 단, 계약금 완납 후 전매가 가능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수도권 외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고 기존 주택당첨여부와 관계없이 본 아파트에 청약이 가능 합니다.(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며,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에 상관없이 재사용이 불가함.)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 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 주택형별 재당첨 제한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민영주택인 경우 투기과열지구에 공급하는 주택과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향후 「주택법」 및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전매 및 재당첨제한 등의 사항은 청약시점의 관계법규의 적용을 받으며, 향후 관계법규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투기 적발자 처벌(「주택법」 제101조) – 분양과 관련하여 주택청약통장 및 주택분양권을 불법 거래하다가 적발된 자는 「주택법」에 따라 주택공급계약 취소, 형사고발로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불법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부동산업자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청약자의 편의를 위해 사이버모델하우스(http://www.egthe1.co.kr/wonju2)를 운영하오니 직접 방문하지 않으셔도 견본주택 관람이 가능합니다. 단, 사이버모델하우스만을 관람하고 청약할 경우에는 판단의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청약기간 내 실제 견본주택을 직접 방문 · 확인하여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며, 착오에 따른 불이익 발생시 사업주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의 건축관련 도면은 견본주택에 비치되어 있으니 관람 및 청약 시 참고하시기 바라며, 유의사항 및 제반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 하시어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순위 접수방법이 2017.11.24일부터 청약신청금 납부에서 청약통장 사용으로 변경되었으니 2순위로 청약하고자 하시는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지역별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 예 · 부금 포함)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2017.09.20.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예비입주자 선정방식이 추첨에서 가점제 방식으로 변경되었으며,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하고 남는 경우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 제1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일반공급 대상 주택수의 40%(소수점 이하는 절상한다)로 예비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6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egthe1.co.kr/wonju2)에 공개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며,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7.09.20.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6항 제2호에 의거 본 주택에 가점제로 당첨되신 분은 당첨일로부터 2년간 가점제 당첨제한자로 관리되오니, 향후 당첨자 본인 및 세대원이 가점제가 적용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가점제 제한사항 적용여부를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가점제 제한사항 : 가점제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2년간 가점제에 의한 재당첨 제한.(당첨자 발표일이 2017.10.18. 이후인 민영주택의 가점제로 당첨된 경우부터 적용) ■ 본 아파트에 1순위 청약시 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자는 추첨제로 청약접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가점제 제한 청약자가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처리되오니 청약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과거 2년이내 가점제 적용 : 당첨자 발표일이 2017.10.18. 이후인 민영주택의 가점제로 당첨된 경우부터 적용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의 청약자격이 개정되었으니 청약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무주택 군인→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유주택자도 청약 가능) – 입주자저축 1년이상 가입자→본 주택의 해당순위(1순위 및 2순위)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시 청약 가능 ■ 10년 이상 장기복무중인 군인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해당주택건설 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봅니다. ■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5일이 지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동안에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던 것을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내용 외 자세한 사항은 2017.11.2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원주시청 주택과 – 4342 호(2018.01.25)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대상 : 강원도 원주시 지정면 원주기업도시 2-1블록 ■ 공급규모 및 내역 : 지하 2층, 지상 15~29층 아파트 7개동 및 부대복리시설

Ⅰ.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

■ 공급대상

구분	아파트코드 및 주택관리번호	주택형	세대당 주택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공급세대수							저층 배정 세대수	입주예정 시기
			공급면적			공용면적		계약면적		계	특별공급					일반공급		
			주거전용	주거공용	계	기타공용	주차장				기업도시종사자	일반(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			
민영주택	2018000069-01	59A	59.8886A	22.4126	82.3012	3.4962	25.5053	111.3027	40.7325	176	17	17	17	17	5	103	6	2020년 6월
	2018000069-02	59B	59.9924B	21.9756	81.9680	3.5022	25.5495	111.0197	40.8031	172	17	17	17	17	5	99	2	
	2018000069-03	84	84.9709	29.7646	114.7355	4.9603	36.1873	155.8831	57.7919	428	42	42	42	42	12	248	11	

• 대지지분 0.0136㎡ 및 계약면적 0.134㎡는 101동 101호에 산입함.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음(㎡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 × 0.3025 또는 ㎡ ÷ 3.3058)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기타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주민공동시설 등의 공용면적임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당해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님(동일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동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견본주택에 설치된 세대, 모형물과 팜플렛 등으로 대상주택을 안내하오니, 설계도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청약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람 • 대지지분은 용도별 계약면적 비율에 따라 균등 배분하였으며, 공동주택 세대별 대지지분은 공동주택 총 대지지분을 계약면적에 따라 배분하였음. 상기 공부상 면적과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 실측 정리 또는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계약면적과 등기면적이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급 계약 시 면적이 소수점이하 면적변동에 대해서는 상호 정산하지 않음. • 상기에 표기된 대지지분은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총 합계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발생된 오차는 상기 항목과 마찬가지로 상호 정산하지 않음.
• 청약신청시 반드시 위 공급대상의 '주택형'으로 청약하여야 함

■ 공급금액

[단위 : 원]

주택형(㎡)	동별(라인별)	층별	세대수	공급금액			계약금		중도금						잔금
							1회	2회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대지비	건축비	분양가	계약시	2018-03-31	2018-06-30	2018-10-31	2019-02-28	2019-07-31	2019-10-31	2020-02-29	입주지정일
59A	201동 4호 203동 1,2,4호 204동 1,2,4호 205동 4호 207동 4호	1층	6	24,017,658	129,982,342	154,000,000	7,000,000	8,400,000	15,400,000	15,400,000	15,400,000	15,400,000	15,400,000	15,400,000	46,200,000
		2층	8	24,017,658	136,982,342	161,000,000	7,000,000	9,100,000	16,100,000	16,100,000	16,100,000	16,100,000	16,100,000	16,100,000	48,300,000
		3층	9	24,017,658	143,982,342	168,000,000	7,000,000	9,800,000	16,800,000	16,800,000	16,800,000	16,800,000	16,800,000	16,800,000	50,400,000
		4층	9	24,017,658	147,982,342	172,000,000	7,000,000	10,200,000	17,200,000	17,200,000	17,200,000	17,200,000	17,200,000	17,200,000	51,600,000
		5~9층	45	24,017,658	148,982,342	173,000,000	7,000,000	10,300,000	17,300,000	17,300,000	17,300,000	17,300,000	17,300,000	17,300,000	51,900,000
		10층이상	99	24,017,658	150,982,342	175,000,000	7,000,000	10,500,000	17,500,000	17,500,000	17,500,000	17,500,000	17,500,000	17,500,000	52,500,000
59B	201동 3호 202동 2호 203동 3호 204동 3호 205동 3호 206동 2호 207동 4호	1층	2	24,059,287	125,940,713	150,000,000	7,000,000	8,000,000	15,000,000	15,000,000	15,000,000	15,000,000	15,000,000	15,000,000	45,000,000
		2층	6	24,059,287	131,940,713	156,000,000	7,000,000	8,600,000	15,600,000	15,600,000	15,600,000	15,600,000	15,600,000	15,600,000	46,800,000
		3층	7	24,059,287	138,940,713	163,000,000	7,000,000	9,300,000	16,300,000	16,300,000	16,300,000	16,300,000	16,300,000	16,300,000	48,900,000
		4층	7	24,059,287	142,940,713	167,000,000	7,000,000	9,700,000	16,700,000	16,700,000	16,700,000	16,700,000	16,700,000	16,700,000	50,100,000
		5~9층	35	24,059,287	143,940,713	168,000,000	7,000,000	9,800,000	16,800,000	16,800,000	16,800,000	16,800,000	16,800,000	16,800,000	50,400,000
		10층이상	115	24,059,287	145,840,713	169,900,000	7,000,000	9,990,000	16,990,000	16,990,000	16,990,000	16,990,000	16,990,000	16,990,000	50,970,000
84	201동 1,2호 202동 1,3,4,5호 205동 1,2호 206동 1,3,4,5호 207동 1,2,3호	1층	11	34,076,624	172,923,376	207,000,000	7,000,000	13,700,000	20,700,000	20,700,000	20,700,000	20,700,000	20,700,000	20,700,000	62,100,000
		2층	15	34,076,624	181,923,376	216,000,000	7,000,000	14,600,000	21,600,000	21,600,000	21,600,000	21,600,000	21,600,000	21,600,000	64,800,000
		3층	15	34,076,624	191,923,376	226,000,000	7,000,000	15,600,000	22,600,000	22,600,000	22,600,000	22,600,000	22,600,000	22,600,000	67,800,000
		4층	15	34,076,624	195,923,376	230,000,000	7,000,000	16,000,000	23,000,000	23,000,000	23,000,000	23,000,000	23,000,000	23,000,000	69,000,000
		5~9층	75	34,076,624	198,923,376	233,000,000	7,000,000	16,300,000	23,300,000	23,300,000	23,300,000	23,300,000	23,300,000	23,300,000	69,900,000
		10층이상	297	34,076,624	200,923,376	235,000,000	7,000,000	16,500,000	23,500,000	23,500,000	23,500,000	23,500,000	23,500,000	23,500,000	70,500,000

※ 주택형 표시 안내

공고상(청약시 주택형 약식표기)	59.8886A	59.9924B	84.9709	비고
약식표기	59A	59B	84	

• 주택형 표기는 '주거전용면적'으로만 표기하오니 이점 유념하시어 청약신청 바람.[평형환산방법 : 공급면적(㎡) × 0.3025 또는 공급면적(㎡) ÷ 3.3058] •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벽체 등 주거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 관리/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의 그 밖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음.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당해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면적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고, 동일 주택형의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도 동 · 호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상기 세대별 대지지분은 용도별 계약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지적확정측량결과 또는 공부정리 결과에 따라 최초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시 대지지분과 차이(면적 증감)가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특정 동 · 호수에 가산(감산)할 수 있으며 공급금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 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 할 수 있음(단, 소수점 이하 면적변경에 대해서는 정산금액이 없음). • 층수는 건립 동별, 해당 주택형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임(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공간에 해당하는 층, 호수를 적용하여 층, 호수를 산정하였으며, 실제 층수에 해당하는 층, 호수를 고려 하여 분양가를 산정함) • 상기 공급금액은 분양가 자율화에 따라 공급총액 범위내에서 주택형별, 층별 등으로 차등을 두어 당사가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임. • 상기 공급금액은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이 미포함 되었고, 각 주택형별 지하주차장 및 지하피트에 대한 금액이 포함된 금액임. • 상기 공급금액은 마이너스옵션품목이 포함된 가격이며, 마이너스옵션품목은 분양계약자 선택사항임.
• 상기 공급금액은 추가 선택품목[발코니 확장, 시스템 에어컨 등] 비용이 포함되지 아니한 가격이며, 추가 선택품목은 계약자가 선택하여 계약하는 사항으로, 분양계약시 별도의 계약을 통해 선택이 가능함.
• 공급금액에 계상되지 않았거나 변경되는 토지관련 조세(종합토지세)는 추후 부과되는 실과세금액을 입주자 잔금납부시 납부하여야 함. • 근린생활시설(단지내 상가)은 별도 분양대상으로서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 공급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함(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영업일을 기준으로 함) • 중도금은 당해 주택의 건축공정이 전체 공사비(부지매입비를 제외함)의 50% 이상이 투입된 때(다만 동별 건축공정이 30%이상 되어야 한다.)를 기준으로 전후 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상기 중도금 납부일자는 예정일자이고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음. •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받고 입주(열쇠 불출)전에 완납하여야 함. 다만, 임시사용승인을 얻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받을 수 있음.(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 절차 등의 이유로 실 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위 단서 조항이 적용되지 않음) • 중도금 또는 잔금을 납부일자 이전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공급계약서의 할인율(선납당일 기준)을 적용하여 선납일수에 따라 산정된 금액이 할인됨. 단, 잔금에 대하여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이전에 납부한 경우에 선납할인이 적용되며 입주지정기간에는 선납할인이 적용되지 않음 • 중도금 금융대출을 원하는 경우 수분양자가 분양계약체결 후 지정된 대출 협약은행과 별도의 중도금대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세부적인 대출신청일정 등은 별도안내 예정). 단,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일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함(미납시 연체료가 가산됨).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사업주체가 장래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건축물을 포함한다)를 신탁하는 경우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함. •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기간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함. • 선납금액은 주택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고, 선납할인액은 상기 중도금 일정에 따라 계산됨. • 계약금은 1, 2회차로 구분하여 납입하며, 2차 계약금의 경우 지정일 이후에 납입할 경우 연체료가 부과됨. • 본 표시재산의 구조물 및 제반 사항은 설계도면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못한 사항으로 인한 이의제기 및 그 밖의 인쇄물이나 구두약정의 내용을 인정 하지 아니함.
• 상기 공급세대의 청약접수는 동별, 층별, 호별 구분 없이 주택형별 청약 순위별로 접수를 받고 동 · 호수를 추첨하여 추첨결과에 따라 각 동별, 층별, 호별로 당첨자를 선정함.
• 청약(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및 분양계약 시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사본불가) •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2017.01.20.부터 시행됨에 따라, 아파트 분양계약 역시 신고대상에 포함됨에 따라서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시군구청에 신고하여야 하며, 거래당사자 공동의 신고를 요하므로 신고의 편의를 위하여 계약체결시 사업주체에 신고를 위임하여 업무를 진행하여야 함.

Ⅱ.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특별공급

■ 특별공급 공통사항[기업도시 종사자/기관추천(국가유공자 · 장애인 · 철거주택 소유자 등)/다자녀가구/신혼부부/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 기업도시 종사자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청약통장가입 요건 등 일부항목 적용 배제함. • 특별공급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40조, 제41조, 제46조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에 한정) 1회에 한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음.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상의 ①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고, ② (세대주 및 세대원 중) 청약신청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전원이 무주택일 때, ①, ②에 포함된 사람을 무주택세대구성원이라 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4호 참조) ⇒ ①에 해당하는 분들 중 ②를 충족하시는 분만이 특별공급(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에 한함)에 청약신청 할 수 있습니다.(세대주가 청약신청 할 경우에는 ①과 ②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서로 동일함) *세대주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주민등록 분리세대인 경우 배우자 세대가 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에 등재된 것으로 봄

주택공급신청자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세대원(세대주가 청약시 무주택세대구성원과 주택공급신청자는 동일함.) ※ 1세대내 1인만 신청가능
무주택여부 확인 대상자	– 세대주, 세대원(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그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중복청약 및 당첨 시 처리기준	■ 공통사항 – 1세대내 1인만 신청가능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됨(부적격당첨자로 처리) – 특별공급간 중복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청약 시 모두 부적격 처리됨(부적격당첨자로 처리)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의함

•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8조에 의거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8.01.25) 현재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추어야 함.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12호, 제13호, 제14호, 제17호 및 제28호를 제외한다), 제36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제35조 제1항 제17호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말한다)]를 제외한다.(국가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장애인, 철거주택 소유자 등)
① 청약예금 :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민영주택의 청약 예치기준금액(지역별 · 면적별)에 따른 예치기준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입한 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정해진 날에 입금한 납입인정금액이 85㎡ 이하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민영주택의 청약 예치기준금액 이상인 자 (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청약저축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민영주택의 청약 예치기준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입하고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해당 청약예금으로 변경한 자
④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민영주택의 청약 예치기준금액(지역별 · 면적별)에 따른 예치기준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입한 자
※ 민영주택의 청약 예치기준금액(「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9조 제3항 관련)

구분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원주시 등)	서울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전용면적 85㎡ 이하	200만원	300만원	25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300만원	600만원	400만원

구분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원주시 등)	서울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전용면적 135㎡ 이하	400만원	1,000만원	700만원
모든 면적	500만원	1,500만원	1,000만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9조 제3항 관련 [별표2] '민영주택의 청약 예치기준금액'에 따라 지역별, 주택규모별 예치금을 예치한 청약통장 가입자는 그 예치금 이하에 해당하는 면적의 주택에 대해 별도의 면적변경 없이 청약 가능

※ 당첨자 선정(공고) 유의사항 – 개별 통지는 하지 않으며 당첨자 명단에 대한 전화문의는 응답하지 않음. – 사업주체는 당첨자만을 선정하며, 동 · 호는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금융결제원 입주자선정 프로그램으로 배정함(동 · 호 배정결과는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공고할 예정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5항의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업무 중 동 · 호수 배정업무를 추첨기관(전산관리지정기관)에서 수행하므로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일시와 동 · 호수 배정결과 발표일시가 상이함. – 특별공급의 추첨순서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에 해당하는 기업도시 종사자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해당하는 기관추천 특별공급, 제40조에 해당하는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제41조에 해당하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제46조에 해당하는 노부모 부양자 특별공급 순으로 추첨하나, 추첨일의 상황에 따라 사업주체에서 임의로 추첨순서를 변경할 수 있음.
• 특별공급 유의사항 – 1세대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포함)이 각각 신청, 중복청약하여 당첨될 경우에는 모두 부적격 당첨으로 당첨이 취소됨(당첨자 명단관리, 계약체결 불가, 입주자 저축효력 상실 및 재사용 불가). 단,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의 경우 무주택세대주 요건이 적용됨. – 특별공급 신청자는 일반공급 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되면 해당 특별공급주택만 당첨으로 인정하며, 일반공급 주택에 대한 청약은 무효로 처리함. – 본인이 특별공급 중복신청 할 수 없으며 중복청약시 모두 무효처리됨.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당첨자 명단은 전산관리됨. – 특별공급은 별도의 예비당첨자를 선정하지 않으며, 특별공급 신청 미달시 잔여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함. – 청약신청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신청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부적격된 특별공급주택 및 미계약 또는 계약 해제 또는 해지된 특별공급주택은 일반공급 예비당첨자에게 공급됨. –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제출한 무주택 증명서류로 우선 입주자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음. –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청약 시에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을 무주택으로 인정하지 않음. – 공급별 구비서류 미비자는 접수가 불가하며, 접수마감시간 이후에는 추가로 접수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람(신청자, 배우자, 세대원 등의 관계 및 신청자격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추 가로 별도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기간이 상이할 경우, 또는 유주택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분양계약 체결 이후라도 당첨취소 및 계약해제는 물론 관련법령에 의거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계약해제시 계약금 납부금액에 대한 별도의 이자는 지급되지 않음. –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하는 자는 신청할 수 없음(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1호 제외)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 · 호수를 배정받은 후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 될 수 있음.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 제4항에 의거 10년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봄
• 특별공급 신청자격별 · 주택형별 공급세대수

(단위 : ㎡, 세대)

구분	대상세대 59A	대상세대 59B	대상세대 84	계
기업도시 종사자 특별공급	17	17	42	76
기관추천 특별공급	17	17	42	76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17	17	42	76

구분	대상세대 59A	대상세대 59B	대상세대 84	계
신혼부부 특별공급	17	17	42	76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5	5	12	22
합계	73	73	180	326

■ 기업도시 종사자 특별공급(「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 신청자격 – 대상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8.01.25) 현재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의하여 해당기관에서 주택특별공급 대상자로 확인하여 '주택특별공급대상자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자 단, 특별공급 대상기관 종사자와 그 세대에 속한 자 및 종사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종사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특별공급 대상자에서 제외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1인 1회에 한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특별 공급함 1) 원주기업도시로 이전하거나 설치하는 기업체 종사자(단, 기업도시 내 사업장 이전을 목적으로 용지계약을 체결하고 대금납부를 완납한 사업체 종사자 포함) 2)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장 · 군수의 확인을 받은 자 가. 원주기업도시로 이전하거나 설립하는 교육기관의 교원 또는 종사자 나. 원주기업도시로 이전하거나 설립하는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 · 고시된 공공기관 및 연구기관의 종사자
• 신청방법 : 해당 신청일에 공인인증서를 소지하고 한국주택협회 특별공급 인터넷 청약시스템(혁신도시 등, http://apt2.housing.or.kr)에 접속하여 인터넷 청약하시기 바람
※ 공인인증서는 5대 인증기관[금융결제원, 한국증권전산,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정보통신]중 하나의 공인인증서를 소지하여야 인터넷신청을 할 수 있음

한국주택협회 홈페이지 접속(www.housing.or.kr) ⇨ 메인화면의 "특별공급 인터넷 청약시스템(혁신도시 등) 선택(http://apt2.housing.or.kr/) ⇨ 특별공급 인터넷 청약 선택 ⇨ 해당 사업명의 청약신청 선택 ⇨ 주택형 선택 ⇨ 유의사항 확인 ⇨ 공인인증서 로그인 ⇨ 서약서 동의 ⇨ 청약내용 입력 ⇨ 청약내용 확인 ⇨ 청약신청 제출(공인인증서 인증) ⇨ 청약신청 완료

※ 신청시간 – 인터넷 청약시간은 1일차 2018.01.30.(화) 09:00~17:30, 2일차 2018.01.31.(수) 09:00~13:00이며, 청약 마감시간까지 청약신청을 완료(저장기준)하여야 하므로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신청하지 마시고, 미리 인터넷에 접속하여 여유 있게 신청하시기 바람. – 인터넷 청약신청시 신청당일 마감시간 전까지 신청내용을 변경(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며, 마감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수정 또는 삭제)이 불가능함.
• 당첨자 선정방법 – 청약신청자가 공급세대수를 초과하여 경쟁이 발생할 경우 당첨자 선정은 추첨에 의하여 당첨자를 선정합니다.(한국주택협회 www.housing.or.kr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당첨자 선정과 관련한 개별통지는 하지 않으며 당첨자 명단에 대한 전화문의는 응답하지 않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은 별도의 예비당첨자를 선정하지 않으며, 특별공급 신청 미달시 잔여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함.

■ 기관추천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 전용면적 85㎡이하 공급세대수의 10% 이내)

• 신청자격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해당하는 자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8.01.25)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특별공급 대상으로 관련 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자(단, 철거주택 소유자 특별공급대상자는 무주택세대 여부와 상관없음)

추천대상자	청약통장 구비여부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5.18유공자, 참전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장애인, 철거주택 소유자	청약통장 필요 없음
장기복무(제대)군인, 북한이탈주민, 납북피해자, 일본군위안부, 영구귀국과학자, 올림픽 등 입상자, 중소기업근무자, 의사상자, 우수기능인, 해외취업근로자 등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해당요건을 갖춘 분

• 당첨자 선정방법 – 대상기준 및 청약경쟁률이 1:1을 초과하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은 추첨에 의함. – 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는 관련기관에서 선정하여 당사에 통보한 자만 신청이 가능하며, 관련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신청하여야 함[미신청시 당첨자 선정(동 · 호배정) 및 계약불가]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함.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 전체 공급세대수의 10% 이내)

• 신청자격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8.01.25) 현재 민법상 미성년자(만19세 미만)인 직계자녀 3명 이상을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이 가능함.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3명 이상의 자녀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이어야 하며, 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상 공급신청자와 다른 지역에 거주할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함. – 자녀수에는 입양자녀도 포함되며(단, 임신중에 있는 태아나 입양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할 경우에는 출산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입주 전 불법낙태 또는 파양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을 취소함), 재혼으로 성이 다른 직계가 아닌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 다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상 청약신청자와 세대를 달리할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의함.
• 당첨자 선정방법 – 다자녀가구 배점 기준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되, 동일점수로 경쟁이 있을 경우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순으로 공급함
* 다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상 공급신청자와 세대를 달리할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 다자녀가구 배점 기준표(신청시 배점표에 자필작성 및 점수기재)

평점요소	총 배점	배점기준 기준	배점기준 점수	비고
계	65			
미성년 자녀수 (1)	5	미성년 자녀 4명 이상	5	자녀(태아나 입양아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경우만 포함
영유아 자녀수 (2)	10	자녀 중 영유아 2명 이상	10	영유아(태아를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6세미만의 자녀
		자녀 중 영유아 1명	5	
세대구성 (3)	5	3세대 이상	5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부모 가족	5	공급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
주택기간 (4)	20	공급신청자가 만40세 이상이면서 무주택기간 10년 이상	20	배우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공급신청자가 만35세 이상이면서 무주택기간 5년 이상	15	
		무주택기간 5년 미만	10	
해당 시 · 도 거주기간 (5)	20	10년 이상	20	공급신청자가 당해 지역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 * 시는 광역시 · 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 · 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 · 경기 · 인천지역 전체를 해당 시 · 도로 본다.
		5년 이상~10년 미만	15	
		1년 이상~5년 미만	10	
		1년 미만	5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6)	5	10년 이상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 · 재혼의 경우 자녀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에 한함]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적용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가입확인서로 확인 ※ 동점자 처리 :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 상기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위 기재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기간 상이 및 유주택자 등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당첨취소 및 계약해제는 물론 관련법령에 의거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사실이 있는 경우 당해 시 · 도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

■ 신혼부부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 전용면적 85㎡이하 공급세대수의 10% 이내)

• 신청자격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8.00.00) 현재 혼인(신고일 기준, 재혼 포함)기간이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임신 중(입주자모집 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로 확인, 이하 동일)이거나 출산(자녀의 기본증명서상 출생일 기준, 입양의 경우에는 입양신고일 기준으로 확인)하여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 대구성원으로서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제9조'에서 정한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자.
* 재혼일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내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 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 출산은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판단하며,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 입양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양자 및 친양자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 상 입양신고 일이 적용됨) 등으로 확인 * 임신의 경우 계약서류 제출시 출산관련자료(출생증명서, 유산 · 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시 임신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됨.(출산관련자료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계약서류 제출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한자는 입주시까지 출생증명서 또는 유산 · 낙태관련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 * 입양의 경우 입주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고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입양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양관계증명서 등)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입주 전 파양한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취소 및 계약 취소되며, 향후 신청이 제한됨.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말한다)의 10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 는 120%)이하여야 함.
※ 2016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통계청 자료)

구분	2016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3인 이하	4인	5인 이상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4,884,448원 이하	5,630,275원 이하	5,630,275원 이하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5,861,338원 이하	6,756,330원 이하	6,756,330원 이하

* 6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은 5인 이상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기준으로 함. *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의 100%를 넘지 않아야 함. * 가구당 소득의 산정에 포함되는 대상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및 성년자인 세대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으로 하되 주민 등록표상 세대가 분리된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세대주의 성년인 직계존 · 비속도 세대원으로 간주함.
* 단, 세대원의 실종,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은 가구당 연간소득÷근무월수를 말하며,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상의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월수는 근로자의 경우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함.
• 당첨자 선정방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혼인기간 및 자녀유무에 따라 순위제를 규정함 ① 제1순위 : 혼인기간이 3년 이내이고 그 기간 내에 임신 중(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기준, 이하 동일)이거나 출산(자녀의 기본증명서상 출생신고일 기준, 입양의 경우 입양신고일 기준, 이하 동일)하여 자녀가 있는 자 ② 제2순위 : 혼인기간이 3년 초과 5년 이내이고 그 기간 내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자
–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다음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함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 ②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많은 자 ③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 재혼인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 기간 내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 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1, 2순위로 인정되나, 우선순위 선정에 있어서는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한 미성년인 자녀가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는 포함(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하여 산정함.
– 임신부부 또는 입양부부가 신혼부부 주택 입주자로 선정되는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에게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출산 및 입양관련 서류(출생증명서, 유산 · 낙태 관련 진단서 등) 제출을 요구하여 출산여부 및 입양상태를 확인할 수 있음. 다만, 입양의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 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하여, 임신부부의 임신상태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확인 할 수 있음. 입주예정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법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음.

■ 노부모 부양자에 대한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 전체 공급세대수의 3% 이내)

• 신청자격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8.01.25)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하고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무주택 기간에서 제외한다).
* 무주택세대주기간 산정시 노부모(배우자가 있을 경우 배우자도 포함)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경우에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여도 유주택자로 봄.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청약 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 당첨자 선정방법 –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은 민영주택 가점제를 적용하되, 동점일 경우 추첨의 방법에 의함. – 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가점제 적용은 신청자 본인이 작성한 '청약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우선순위로 당첨자를 선정함. – 특별공급 청약신청시 청약가점 산정기준표를 신청자가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별도의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용 청약가점 산정기준표는 없으므로 일반 청약가점기준표를 작성토록 함(견본주택 비치)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한 청약가점 산정기준표의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음.

■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 인터넷 청약서비스 안내(해당순위 청약신청일 08:00~17:30)

– 국민은행 및 금융결제원에서는 청약 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하여 은행 영업점 방문 없이 간편하고 편리하게 청약신청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인터넷 청약서비스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 많이 이용하시기 바라며,
–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금융결제원(www.apt2you.com)에서 운영하는 "인터넷청약 가상체험관", 국민은행(www.kbstar.com)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청약신청 안내"를 활용하시기 바람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현재 청약순위가 발생하신 분은 청약통장 가입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 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청약신청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아야 함.

구분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	국민은행을 제외한 은행 청약통장 가입자
이용대상	공통	– 1순위 : 최초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순위가 발생한 분 – 2순위 :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 예 · 부금 포함)에 가입한자	
	인터넷	– 청약통장 가입은행에서 인터넷뱅킹 서비스 이용신청을 하신 분	
이용방법 및 절차	인터넷	– 국민은행홈페이지(www.kbstar.com)접속 ▶ 공인인증소를 통한 로그인 ▶ 특화서비스 「주택청약」 ▶ 「인터넷 청약」 ▶ 「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완료	– 아파트 투유 홈페이지(www.apt2you.com) 접속 ▶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APT 청약신청」 ▶ 「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완료

※ 주택청약 참가은행 : 기업, 국민, 수협, 농협, 우리, SC, 한국씨티,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KEB하나, 신한은행

■ 일반공급

• 신청자격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8.01.25) 현재 만19세 이상(만19세 미만인 자 중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또는 직계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 대의 세대주 포함)인 자[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 – – 이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에 따라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자도 공급대상에 포함됨. 단, 공급신청자 중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 제3항에 의거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원주시 거주자가 우선함.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4항에 의거 10년이상 장기복무중인 군인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인정됨[본 주택의 해당순위(1순위 및 2순위)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시 청약가능]
– 본 주택은 비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으로 과거 당첨사실이 있어도 청약이 가능함. – 신청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중복신청이 불가(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청약 모두를 무효 처리함.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고 당첨된 청약관련 예금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계좌로 재사용할 수 없으며, 당첨자로 관리됨. – 부적격 당첨자(주택소유 부적격, 착오기재 등)는 당첨일로부터 1년동안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이 지난후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 불가함. – 청약예금을 가입한 후 예치금액이 작은 지역에서 큰 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한 분은 신청일 현재 변경된 주거지역에 해당하는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증액하여야 청약이 가능함.(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 또는 주거변경 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지역간 예치금액 변경 없이 청약 가능함)
⊙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9조 제3항[별표2]

구분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원주시 등)	서울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전용면적 85㎡ 이하	200만원	300만원	25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300만원	600만원	400만원

구분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원주시 등)	서울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전용면적 135㎡ 이하	400만원	1,000만원	700만원
모든 면적	500만원	1,500만원	1,000만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9조 제3항 관련[별표2] '민영주택의 청약 예치기준금액'에 따라 지역별, 주택규모별 예치금을 예치한 청약통장 가입자는 그 예치금 이하에 해당하는 면적의 주택에 대해 별도의 면적변경 없이 청약 가능
⊙ 순위별 자격요건

구분	거주구분	순위	주택형	청약관련 신청자격
민영주택	전국	1순위	전용면적 85㎡이하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가점제 40%, 추첨제 60% 접수) 1)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민영주택의 청약 예치기준금액(지역별 · 면적별)에 따른 예치기준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입한 자 2)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정해진 날에 입금한 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민영주택의 청약 예치기준금액 이상인 자 3)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제순위에 필요한 청약 예치기준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입하고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해당 청약예금으로 변경한 자 4)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민영주택의 청약 예치기준금액(지역별 · 면적별)에 따른 예치기준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입 한 자 ※ 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자는 추첨제로 청약접수하여야 함. 또한 가점제 제한 청약자가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 처리되어니 청약시 유의하시기 바람.(과거 2년이내 가점제 적용 : 당첨자 발표일이 2017.10.18. 이후인 민영주택의 가점제로 당첨된 경우부터 적용)
		2순위	전 주택형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 예 · 부금 포함)에 가입한자

1. 특별공급(기업도시 종사자/기관추천/다자녀/신혼부부/노부모부양자) : 해당 청약신청 기간에 당사 견본주택에서 청약신청 하여야 함.(단, 기업도시 종사자 특별공급은 한국주택협회 특별공급 인터넷 청약시스템(혁신도시 등)에서 청약신청하여야 함.)
2. 일반공급 (1) 층 · 동별 · 호별 · 향별 구분 없이 주택형별 · 청약순위별로 청약접수 하되, 선순위 신청접수 결과 일반공급 세대수의 초과하더라도 예비당첨자 선정비율(일반공급 세대수의 40%)에 미달할 경우 차순위 접수를 받을 수 있으므로 청약신청 전 청약 경쟁률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단, 2순위까지 청약접수 결과 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140%에 미달하는 경우 더 이상 접수하지 않음)
(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일(2018.01.25) 현재 청약신청자나 청약신청자의 세대에 속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주택 공급신청 시 주택의 최하층을 희망하는 때에는 해당 최하층을 그 당첨자에게 우선 배정함.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배정함. 단, 신청자가 많은 경우 다른 층을 배정받을 수 있고, 적은 경우에는 미신청자(최하층 우선배정 신청 비대상자 포함)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음(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 1층이 없는 주택형의 경우 최저층을 말함)
1.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인 자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3.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
3. 1순위 – 1순위 청약자 전원은 가점제로 접수하되, 과거 2년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자는 추첨제로 접수하여야 하며, 가점제 낙첨자는 별도 신청절차 없이 추첨제 대상자로 전환합니다.
※ 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에 대하여 일반공급 대상 주택수의 40%를 가점제를 적용 우선공급하고, 60%를 추첨제로 공급하며, 전용면적 85㎡ 초과의 주택에 대하여 일반공급 대상 주택수의 100%를 추첨제로 신청자에게 공급함.
4. 2순위 : 청약신청자 전원 추첨제로 청약접수.

■ 유의사항

○ 청약신청시 유의사항 및 당첨자 선정방법
• 청약통장 가입은행의 "인터넷뱅킹과 전자공인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 받아야 함. • 가점제 입주자 선정방법 : 가점점수 산정기준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에 의한 높은 점수 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함.
• 청약가점항목 및 점수 : 무주택 기간(32점), 부양가족수(35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17점) 등 총점 84점. • 가점제에서 탈락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추첨제 대상자에 포함하여 입주자를 선정함. • 점수 입력은 청약자 책임(당첨자 결정 후에 당첨자의 청약내용에 대한 정확성을 확인하게 됨)이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함.

※ 주택공급 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지란」의 인자된 내용과 주택공급신청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고,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을 하여야 함. ※ 청약자격 제한조건을 확인하시어 향후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바람. ※ 청약신청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하여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자 본인에게 있음. ※ 청약신청시 은행에서는 청약자의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 없이 주택공급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으로만 청약접수를 받으므로 청약자는 본인의 청약자격(거주지역, 거주개시일,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주택소유여부 등)을 신청 전 확인하여 청약하여 주시기 바람.
※ 청약신청은 청약자 본인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므로 청약자격 착오 기재 등으로 부적격자로 판정되어 계약체결이 불가하거나, 계약이 취소될 경우 당사 및 접수은행에서 책임지지 않음 ※ 주택소유 및 당첨사실 판단대상 : 청약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포함), 청약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직계존속 포함) 및 직계비속(단,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은 신청자격 판단 시 무주택으로 인정됨)
※ 가점제 개요(가점항목, 점수, 항목별 판단기준 및 유의사항 등), 주택소유여부 판단기준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본 공고 "가점제 및 주택소유관련 유의사항"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결제원(www.apt2you.com)에서 운영하는 "인터넷청약 가상체험관", 국민은행(www.kbstar.com)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청약신청 안내"를 활용하시기 바람
• 가점점수 산정기준표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확인할 서류 등
① 무주택기간	32	만 30세 미만 미혼자	0	4년 이상~5년 미만	10	9년 이상~10년 미만	20	14년 이상~15년 미만	30	– 주민등록등본(배우자 분리세대시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추가) –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등 –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 분리세대 또는 단독세대의 경우 제출) – 혼인관계증명서 : 만 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을 확인
		1년 미만(무주택자에 한함)	2	5년 이상~6년 미만	12	10년 이상~11년 미만	22	15년 이상	32	
		1년 이상~2년 미만	4	6년 이상~7년 미만	14	11년 이상~12년 미만	24	–	–	
		2년 이상~3년 미만	6	7년 이상~8년 미만	16	12년 이상~13년 미만	26	–	–	
		3년 이상~4년 미만	8	8년 이상~9년 미만	18	13년 이상~14년 미만	28	–	–	
② 부양 가족수	35	0명	5	2명	15	4명	25	6명 이상	35	– 주민등록등 · 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1명	10	3명	20	5명	30	–	–	
③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17	6월 미만	1	4년 이상~5년 미만	6	9년 이상~10년 미만	11	14년 이상~15년 미만	16	– 청약통장(인터넷 청약시에 자동 계산됨)
		6월 이상~1년 미만	2	5년 이상~6년 미만	7	10년 이상~11년 미만	12	15년 이상	17	
		1년 이상~2년 미만	3	6년 이상~7년 미만	8	11년 이상~12년 미만	13	–	–	
		2년 이상~3년 미만	4	7년 이상~8년 미만	9	12년 이상~13년 미만	14	–	–	
		3년 이상~4년 미만	5	8년 이상~9년 미만	10	13년 이상~14년 미만	15	–	–	
총점	84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가점 항목별 적용기준

구분	신청자격
①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1)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입주자저축 가입자를 포함한 세대원(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을 말한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하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아래 소형 · 저가주택 소유자를 무주택자로 보는 경우는 제외)하지 아니하여야 함,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무주택자이어야 한다. 2)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으로서 주택가격이 수도권은 1억 3천만원(비수도권 8천만원) 이하인 주택(이하 "소형 · 저가주택"이라 한다)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자로서 제28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자(배우자를 포함한다)는 그 기간 동안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소형 · 저가주택의 주택가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이하 "주택공시가격"이라 한다) 중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르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에는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본다. 3) 무주택기간은 입주자저축 가입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연령이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만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한다. 이 경우 입주자저축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한다. 4) 1)부터 3)까지에 따른 무주택기간의 적용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부양가족의 인정기준	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세대원(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미혼인 자녀로 한정하며,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미혼의 손자녀 포함))으로 한다. 다만,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부양가족으로 본다. 2)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은 입주자저축 가입자(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 포함)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입주자저축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3)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만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입주자저축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③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한다. 2)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에 대한 가점점수는 청약신청시 자동 부여한다.

Ⅲ. 신청일정 및 장소, 구비서류

■ 신청일정 및 장소

구분	신청대상자	거주구분	신청일자	신청방법	신청장소
특별공급	기업도시 종사자 특별공급	전국 (거주제한 없음)	• 2018.01.30.(화) [09:00~17:30] • 2018.01.31.(수) [09:00~13:00]	• 인터넷 신청	• 한국주택협회 특별공급 인터넷 청약시스템(혁신도시 등, http://apt2.housing.or.kr)
	기관추천 특별공급/다자녀 특별공급/신혼부부 특별공급/노부모 특별공급		• 2018.01.31.(수) [09:00~15:00]	• 견본주택 방문접수	• 견본주택 : 강원도 원주시 서원대로 181
일반공급	1순위		• 2018.02.01.(목) [08:00~17:30]	• 인터넷 신청	• 1순위 –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www.kbstar.com) – 국민은행 외 청약통장 가입자(www.apt2you.com)
	2순위		• 2018.02.02.(금) [08:00~17:30]		• 2순위 – 국민은행 인터넷뱅킹 이용자(www.kbstar.com) – 국민은행 외 인터넷뱅킹 이용자(www.apt2you.com)

※ 특별공급 청약신청자 과밀로 서류심사가 지연될 경우 당첨자 선정 및 공고시간은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주택청약 참가은행 : 기업, 국민, 수협, 농협, 우리, SC, 한국씨티,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KEB하나, 신한은행
※ 상기 접수시간의 17:30은 청약접수 완료기준으로 거래중이라도 접수 완료하지 않고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청약신청시 인터넷 또는 은행창구에서는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게 한하여 계약 체결시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람. ※ 2순위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도 계약과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된 통장은 다른주택의 청약신청 및 당첨이 불가함.
• 노약자, 장애우 등 은행창구 청약(일반공급은 인터넷 청약 신청이 원칙이며 노약자, 장애인, 인터넷 취약자 등을 제외하고는 은행창구에서의 청약접수는 불가함)
– 청약 접수 방법 : 청약 접수 당일 아래 구비사항을 준비하여 청약통장을 가입은행에 방문 청약 접수(청약접수 가능시간 09:00~16:00)

구분	구비사항
본인 신청시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 예 · 부금 포함) • 예금인장 또는 본인 · 배우자 서명 • 본인확인증표(배우자 대리 신청시는 배우자의 본인확인증표)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배우자 신청시 배우자 입증서류 추가제출(동일세대 구성시 : 주민등록등본 1통, 분리세대 구성시: 가족관계증명서 1통)[배우자 관계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제3자 대리신청시 추가사항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직계 존 · 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본인확인증표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또는 청약자격 전산등록 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주민등록표 등 · 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음. ※ 주택공급 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지란」의 인자된 내용과 주택공급신청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고,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을 해야 함.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 [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함.

■ 특별공급 신청자격별 구비서류

구분	서류유형 필수	서류유형 추가(해당자)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공통서류	○		특별공급신청서, 무주택서약서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무주택 입증서류(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기타 무주택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용도 : 주택공급신청용
	○		인감도장	본인	
	○		주민등록증	본인	또는 운전면허증
	○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주민등록번호 및 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요망
	○		청약통장순위(가입) 확인서	본인	청약통장 가입은행으로부터 순위(가입) 내역 발급 또는 주택청약 서비스 APT2you 홈페이지에서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 발급 (단, 철거주택 소유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 · 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참전유공자, 장애인은 제외)
		○	주민등록표초본	본인	주민등록번호 및 세대원 포함,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요망
		○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주민등록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 (상기 등본발급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일반 특별공급 (기관추천)	○		해당 기관의 추천서 또는 인정서	본인	장애인 특별공급의 경우 필히 해당 지자체장이 발급한 장애인증명서만 인정함, 복지카드 등 기타서류 불가, 국가유공자는 보훈청 관리명단으로 접수함.
다자녀 특별공급		○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주민등록표상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자녀	재혼가정의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	여성가족부의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으로 지정된 지 5년이 경과된 경우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3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피부양 직계존속	본인의 주민등록표상에 피부양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	○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혼인신고일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본인 및 성년자인 세대원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4호 각 목의 사람 포함) 전원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도 제출(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		소득증빙 서류	세대원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4호 각 목의 사람 포함)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등본상에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기본증명서	자녀	출생관련 일자 확인 필요시
		○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또는 배우자)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 낙태관련 진단서 등) 제출(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입양관계 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본인(또는 배우자)	입양의 경우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또는 배우자)	접수 장소에 비치
		○	비사업자 확인각서	본인	접수 장소에 비치
제3자 대리인 신청시 추가사항	○		인감증명서	청약자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인감도장	청약자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위임장	청약자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접수 장소에 비치
	○		주민등록증	대리인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인장	대리인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8.01.25)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 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 ※ 주민등록표 등 · 초본 발급 시 신청자의 별도 요청이 없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및 "주소변동이력"을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및 "주소변동이력"이 표기되도록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Ⅳ. 당첨자 발표 및 계약일정

■ 일정 및 계약장소

구분	신청대상자	당첨자 발표	동호수 발표	계약체결
특별공급	기업도시 종사자	• 일시 : 2018.01.31.(수) 15:00 이후 • 장소 : 한국주택협회 특별공급 인터넷 청약시스템(혁신도시 등, http://apt2.housing.or.kr)	동호추첨 • 일시 : 2018.02.08.(목) 확인방법 : 금융결제원 홈페이지 (www.apt2you.com)	• 일시 : 2018.02.20.(수)~2018.02.22.(금) (3일간, 10:00~16:00) • 장소 : 당사 견본주택 [강원도 원주시 서원대로 181]
	기관추천/다자녀/신혼부부/노부모	• 일시 : 2018.01.31.(수) 17:00 이후 • 장소 : 당사 견본주택 및 당사 홈페이지 게재 • 특별공급 청약신청 과열로 서류심사가 지연될 경우 당첨자 선정 및 공고 시간은 다소 변경될 수 있음.		
일반공급	1순위	• 일시 : 2018.02.08.(목) • 장소 : 당사 견본주택 게재		
	2순위			

※ 특별공급 동호수 추첨은 금융결제원에서 일반공급분과 일괄 수행함에 따라 당사 견본주택에서 특별공급 당첨자의 동 · 호수 추첨은 별도로 진행하지 않음. ※ 정당 당첨자 계약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시 예비당첨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세대에 대하여는 자격제한 없이 임의 분양함. ※ 예비당첨자 중에서 최초 동 · 호수 배정추첨에 참가하여 당첨된 자는 공급계약 체결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됨.(청약통장 재사용 불가 및 재당첨 제한 등이 적용됨)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함.[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당첨자에게 공급함] ※ 계약체결 이후라도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면 계약은 취소됨.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정당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계약금은 반드시 지정계좌로 무통장 입금한 후 무통장 입금 영수증을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 당일 견본주택에서 계약금(현금 또는 수표) 수납은 불가함. ※ 당첨자 명단은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음.(전화문의는 착오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람)

■ 예비 입주자 유의사항 및 공급방법

– 예비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견본주택에 내방하여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당사에 통보하여야 함. – 통보하지 않을 경우 주소 불명등의 사유로 예비 입주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당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람.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 중 부적격당첨자의 동 · 호수와 미계약 동 · 호수는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공급일정은 별도로 통보할 계획임.
– 동 · 호수 배정 추첨에 참가하여 당첨된 예비입주자는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어 향후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함.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 당첨된 주택의 계약체결기간 만료전에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주택의 계약체결을 통보받은 때에는 이들 주택 중에서 선택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먼저 계약을 체결한 주택에 대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것으로 봄.(동 사유에 해당하는 예비입주자는 동 · 호수 배정 추첨전에 계약할 주택을 선택하여야 하며, 예비입주자의 동 · 호수를 배정받은 경우 예비입주자의 동 · 호수를 배정받은 주택의 당첨자로 인정되며, 기 당첨된 주택의 당첨사실은 무효처리함)

■ 인터넷, ARS, 휴대폰 문자 당첨자 발표 서비스 이용 안내

• 본 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당첨자 발표장소 및 금융결제원 통해 재확인하여 주시기 바람.

구분		국민은행(국민은행에서 청약하신 분)	금융결제원(국민은행을 제외한 은행에서 청약하신 분)
이용기간		2018.02.08.~2018.02.17.(10일간)	
인터넷		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 접속 → KB부동산 → 주택청약 → 당첨확인 → 주택별 조회	금융결제원 홈페이지(www.apt2you.com) 접속 → APT 인터넷 청약 → 당첨사실 조회
전화/ARS		국민은행 콜센터 1588-9999(서비스코드 : 9→1→3)	–
휴대폰 문자서비스	대상	주택청약 신청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자	
	제공일시	2018.02.08.(08:3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국민은행에서 청약하신분은 국민은행에서 별도 서비스 제공	

※ 금융결제원 ARS(국번없이 1369) 서비스는 2017.6.15.자로 종료되었으며, 휴대폰 문자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당첨자 발표장소 등에서 본인이 반드시 재확인하셔야 함.

■ 입주자 선정방법 및 동 · 호수 결정

구분	선정방법
특별공급 (기업도시 종사자 특별공급)	• 당첨자 선정과 관련한 개별통지는 하지 않으며 당첨자 명단에 대한 전화문의는 응답하지 않으니 양지하시기 바람. • 기업도시 종사자 특별공급의 당첨자 선정은 추첨에 의하여 당첨자를 선정함.(한국주택협회 www.housing.or.kr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동호추첨 :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금융 결제원에서 컴퓨터 입주자선정 프로그램에 의하여 동 · 호 배정함. •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물량에 미달된 경우, 잔여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며, 별도의 예비당첨자를 선정하지 않음. • 부적격세대는 일반공급 예비당첨자에게 공급함. • 기업도시 종사자 특별공급과 일반특별공급 중복 청약 후 모두 당첨시 기업도시 종사자 특별공급이 우선함.
특별공급 (기관추천/신혼부부 다자녀/노부모특별공급)	• 사업주체 견본주택에서 당첨자만 선정(당첨자를 추첨으로 선정하는 경우 신청자 또는 일반인의 입회하에 사업주체 견본주택에서 공개추첨 함) 후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금융결제원에서 컴퓨터 입주자선정 프로그램에 의하여 동 · 호 배정함. •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물량에 미달된 경우, 잔여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함. • 특별공급은 별도의 예비당첨자를 선정하지 않으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자는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청약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람.
일반공급	• 금융결제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각 순위별로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이 1순위는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2순위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 · 호수는 무작위로 결정함. •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은 다음과 같으며, 85㎡ 이하 1순위 청약자는 해당 순위에서 가점제(가점점수가 높은 순)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가점제 낙첨자에 한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해당 거주지역 추첨제 대상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재선정함. – 전용면적 85㎡ 이하 : 일반공급 세대수의 40%를 가점제로, 나머지 60%를 추첨제로 공급 – 전용면적 85㎡ 초과 : 일반공급 세대수의 100%를 추첨제로 공급 • 동일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 중 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원주시 거주자가 우선함. • 입주자 선정시 선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14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접수분은 입주자 및 예비 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입주자 선정 시 경쟁이 있는 경우 주택형별 일반공급 세대수의 40%까지 가점이 높은자를 앞 순번의 예비입주자로 선정(주택형별 2순위까지 전체 신청자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14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하고 남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며,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당첨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 · 호수를 공개한 후 동 · 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 · 호수를 배정함.(동 · 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당첨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됨) • 입주자 선정 시 선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14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접수분은 입주자 및 예비 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음. • 예비당첨자 명단은 당첨자 발표시 견본주택에 별도 공고함.

Ⅴ. 계약체결

■ 계약시 구비사항

구분		서류유형 필수	서류유형 추가(해당자)	구비서류	비고
공통		○		•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		•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아파트 계약용) 1통 • 본인서명사실확인서(아파트 계약용) 1통	
		○		• 주민등록표등본(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포함), 주민등록표초본(주소지 변동 내역 모두 포함하여 발급, 거주기간 또는 세대주기간 입증, 직계존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 계약금 무통장 입금 영수증	
			○	• 가족관계증명서(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배우자 유무확인 불가시)	
			○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부(또는 국내거주사실증명서 1부) •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1부)	
			○	• 대리계약시(본인 외 모두 제3자로 간주함) – 위임장, 인감도장(대리인), 인감증명서(아파트 계약 위임용) 1통, 대리인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특별공급	기업도시종사자	○		• 특별공급 대상자 확인서 • 재직증명서 • 서약서(견본주택 비치)	
	신혼부부	○		• 혼인관계증명서	
	신혼부부 다자녀		○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 임신증명서류(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중인 경우 입주자모집공고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기준)	
일반공급			○	• 혼인관계증명서(만30세미만 기혼자가 무주택기간을인정받고자 하는 경우/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 입주자저축에 1년이상 가입하고 그가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 – 군 복무기간(10년이상)이 명시된 복무확인서 1부,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 1부	
부적격 통보를 받은자 (해당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	• 무허가건물확인서 또는 철거예정증명서	
			○	• 소형/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8.01.25)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주택공급 신청용으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람.(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외국인은 공급신청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함) ※ 주민등록표 등 · 초본 발급 시 신청자의 별도 요청이 없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및 "주소변동이력"을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및 "주소변동이력"이 표기되도록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주민등록등본 발급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세대 구성사유, 현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현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 교부대상자 외에 다른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 주민등록초본 발급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개인인적사항 변경내용, 과거의 주소변동사항(전체포함), 과거의 주소변동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 부적격 당첨자의 명단관리 등(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3항 및 제57조 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제58조 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이내에 그 명단을 전산관리지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 전산관리지정기관은 제58조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제57조 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제58조 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하여야 함. • 제58조 제1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1년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하다)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8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본다. 다만, 제57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같은 순위(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제52조 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계약 체결 조건 및 유의사항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 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취소 및 고발조치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함.
• 부적격 당첨자로 통보된 자는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부적격 당첨 소명기간 내에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 체결이 가능함. • 이중당첨자 및 부적격 당첨자에 처리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따라 당첨자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하시어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계약체결 후에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입주자선정대상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을 취소하며 당첨자로 관리함.(단, 부적격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 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기재가 사실임을 증명하는 경우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본 주택의 당첨일로부터 1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을 제한함. – 1순위 당첨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의 소유여부가 신청한 사실과 다른 경우 –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당첨자에게 공급함.
• 부적격 당첨자를 당첨자로 인정하는 경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4항 ① 같은 청약 순위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② 같은 청약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 될 수 있으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음. • 계약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됨.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에 준함.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 지정된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에 아래의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음. • 아래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치 않으며,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음. • 무통장 입금시에는 동 · 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람.(단, 무통장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없음)

납부계좌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계약금 및 분양대금	광주은행	1107-020-432129	(주)이지앤프라임

■ 계약자 대출안내

•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당사 견본주택에서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사업주체가 지정한 금융기관(추후 별도 안내 예정)을 통해 융자 가능하나, 관련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한도가 계약자 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므로 지정한 금융기관에 사전에 확인하여야 함.(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경우 대출가능여부 반드시 확인)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변화에 따라 중도금 대출조건 등이 제한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을 자기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내에 납부하여야 함. • 사업주체가 지정한 은행에서 중도금대출시 대출이자는 사업주체가 지정하는 최초 입주지정일 전일까지 사업주체가 부담(납부)하며, 최초 입주지정일 이후에는 계약자가 부담(납부)하여야 함. 또한 계약자는 분양대금의 10%(계약금) 완납 시 중도금 대출을 실행할 수 있으나 관련 정부 및 금융기관의 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계약자의 개인사정(신용불량, 대출한도초과, 각종보증서발급 제한 등) 등으로 대출 한도가 개인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불가할 수도 있으며 이에 따른 대출불가 및 축소 등의 사유로 인한 계약자의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에게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계약자는 분양대금(미납대금, 연체료 포함)을 계약자의 부담으로 사업주체에게 납부하여야 함.(단, 대출신청에 따른 모든 제반비용(인지대 등)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며, 금융 신용불량거래자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현금으로 직접 납부(이와 관련 하여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를 주장 할 수 없음. • 중도금 대출협약 조건에 의거 계약금 10% 완납 이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람. • 중도금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 등이 발생할 경우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중단 등 요구에 따라 계약해지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아파트는 분양대금의 60%범위 내에서 중도금 대출이 가능함.(단, 개인의 여건에 따라 줄어들 수 있음)

■ 입주자 사전점검 관련 • 입주지정 개시일전 약 1개월 전에 입주자 사전점검 행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사전점검 예정일자는 별도 통보함.

■ 입주예정일 : 2020년 06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 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지정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음.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음.

■ 부대복리시설 : 관리사무소, 경로당, 어린이집, 어린이놀이터, 작은도서관, 주민운동시설, 주민공동시설 등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제37조 규정에 의함.

Ⅵ. 추가 선택품목 계약

■ 발코니 확장

(1) 발코니 확장 공사비

(단위 : ㎡/원/부가가치세포함)

주택형	확장위치	발코니 확장금액	계약금 계약시	잔금 입주지정일
59A	거실, 침실 2, 3, 주방/식당	10,000,000	1,000,000	9,000,000
59B	거실, 침실 2, 3, 주방/식당	10,000,000	1,000,000	9,000,000

주택형	확장위치	발코니 확장금액	계약금 계약시	잔금 입주지정일
84	거실, 침실 2, 3, 주방/식당, 욕실2	14,000,000	1,000,000	13,000,000

(2) 발코니 확장 공사비 납부계좌
• 아래의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발코니 확장 대금은 인정하지 않음. • 발코니 확장 공사비 계약금은 계약 당일 아래의 납부계좌로 납부하여야 함. • 무통장 입금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람.
• 계약금 납부 : 계약시 아래 계좌 입금 후 입금증 견본주택 제출[견본주택에서 계약금(현금 또는 수표) 수납 불가]

구분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발코니확장 공사비	광주은행	1107-020-432248	(주)이지앤프라임

(3) 유의사항
• 다음의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숙지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4호, 제46조 제4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실내 구조변경 할 수 있으며 발코니 실내 구조변경은 입주자모집공고시 공개된 총액 범위 내에서 시공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2005.12.2 개정시행) • 발코니 확장공사비 공급가격은 확장으로 인해 기존 설치항목의 미설치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항목 등의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임. • 발코니 확장공사비는 주택 공급금액과 별도로서 부가가치세 및 발코니확장에 수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 등의 가격이 포함되어 있으며,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미포함된 금액으로 추후 분양계약자가 납부하여야 함. • 상기 발코니 확장공사비는 일괄확장을 전제로 산정된 금액으로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음.(설비 및 인테리어 설계상 연관되어 있어 개별 아이템별 신청이 불가함.)
• 발코니확장 미선택시 세대 내 서비스 제공 품목은 시공되지 아니함. • 시공상의 문제로 아파트 공급계약 체결시 발코니 확장공사 여부를 선택하여 발코니 확장계약을 하여야 하며, 자재발주 문제로 인하여 절대 변경이 불가함.
• 확장범위는 확장형 단위세대 평면도를 기준으로 하며 계약체결 이후 관계법령 해석상의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공사가 일부 변경될 경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발코니 확장과 관련된 마감자재 변경 및 제품의 품절, 품귀 등의 사유로 인해 조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동질이상의 품질 및 기능으로 조정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시 관련법상 내실발코니가 대피공간으로 설치될 수 있고 발코니 창호공사, 발코니 확장공사 및 마감자재의 내용 등은 주택형별로 다소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견본주택을 방문하시어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람. •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면적에 차이가 있으며, 발코니 확장시 동일 주택형이라도 해당 동호수에 따라 확장구간의 폭 및 깊이가 다소 상이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시 세대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천장 환기구 위치, 에어컨 매립배관 위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예 : 옆세대 비확장시 단열에 의해 내부벽이 단열두께만큼 돌출될 수 있음)할 수 있고, 확장된 발코니 일부 벽체는 단열을 위하여 분양안내서 그림보다 다소 두꺼워질 수 있음. • 발코니 확장공사로 인한 면적 및 마감형태(돌출/변형) 등이 각 호별로 다를 수 있으며, 구조 및 기능 만족을 위하여 마감재료의 특성과 규칙이 다를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발코니 확장시 실내습도 등 생활여건에 따라 확장부위(발코니 새시, 유리창 표면, 벽체 등)에 결로 등이 생길 수 있고, 직접 외기에 면해 상대적인 추위를 느낄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주기적인 실내환기는 결로발생 예방에 큰 도움이 됨) • 외부 전면창 설치 및 발코니확장에 따른 냉난방 비용의 상승이 있을 수 있음.
• 각 세대의 발코니에 필요시 선홈통, 선홈통 BOX 및 드레인 등이 본 공사시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발코니 확장 선택시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인하여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발코니부위에 설치되는 각종설비 배관은 노출배관(천장,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하부 바닥 배관으로 인한 턱이 형성될 수 있음. • 비확장 세대의 경우 등기구의 개수 및 램프의 개수가 확정형에 비해 줄어들거나 크기로 축소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시 대피공간과 연결되는 실의 경우 방화문이 설치되며 단열성능으로 인하여 결로가 발생할 수 있음. • 본 아파트의 단위세대 평면은 발코니 확장을 전제로 설계된 것으로 견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 세대를 전시하였으며 비확장세대는 확장형 세대와는 다르게 공간이 협소하여 불편함이 있을 수 있고, 상이한 내부 인테리어가 적용되므로 계약자는 계약전 이를 충분히 확인 후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람. • 발코니 개별확장세대의 개별 입주자가 개별 시공함으로써 입주 후 소음, 진동, 분진 등을 초래하여 타 입주자에게 불안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사업주체와 무관하며 또한 입주후 상당기간 관리비 등이 과다하게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바람.
• 발코니 개별확장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실내인테리어업체 등을 통하여 개별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으로 시공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사업주체가 적법한 감리를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다면 본 아파트의 사업주체에게 일방적인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행 책임소재에 대한 원인 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바람. • 발코니 비확장 선택세대가 입주후 개별적으로 발코니 확장공사를 하여 발생되는 마감재 오염 및 훼손, 결로, 단열 등의 문제는 당사와 무관한 사항이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자세한 확장공사 내역은 견본주택 내에 비치된 확장 안내문을 참고하시거나 문의 바람.

■ 추가 선택품목 – 시스템 에어컨

(1)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단위 : ㎡/원/부가가치세포함)

구분		옵션선택	시스템 에어컨 적용실(실내기)	설치대수	옵션금액	계약금	잔금	비고
59A	가변형벽체 설치	옵션1	거실+침실1	2	3,300,000	1,000,000	2,300,000	
		옵션2	거실+침실1+침실2	3	4,400,000	1,000,000	3,400,000	
		옵션3	거실+침실1+침실2+침실3	4	5,400,000	1,000,000	4,400,000	
	가변형벽체 미설치	옵션1	거실+침실1	2	3,300,000	1,000,000	2,300,000	거실(거실+침실3)
		옵션2	거실+침실1+침실2	3	4,400,000	1,000,000	3,400,000	거실(거실+침실3)
59B	가변형벽체 설치	옵션1	거실+침실1	2	3,300,000	1,000,000	2,300,000	
		옵션2	거실+침실1+침실2	3	4,400,000	1,000,000	3,400,000	
		옵션3	거실+침실1+침실2+침실3	4	5,400,000	1,000,000	4,400,000	
	가변형벽체 미설치	옵션1	거실+침실1	2	3,300,000	1,000,000	2,300,000	
		옵션2	거실+침실1+침실2	3	4,400,000	1,000,000	3,400,000	침실2(침실2+3)
84	기본형	옵션1	거실+침실1	2	3,300,000	1,000,000	2,300,000	
		옵션2	거실+침실1+침실2	3	4,400,000	1,000,000	3,400,000	
		옵션3	거실+침실1+침실2+침실3	4	5,400,000	1,000,000	4,400,000	

(2) 에어컨 모델명

구분		옵션선택	시스템 에어컨 적용실(실내기)	설치장비(LG전자)	비고
59A	가변형벽체 설치	옵션1	거실+침실1	RNW0720C2SP(거실) + RNW0320C2SP(침실1)	
		옵션2	거실+침실1+침실2	RNW0720C2SP(거실) + RNW0320C2SP(침실1) + RNW0200K2SP(침실2)	
		옵션3	거실+침실1+침실2+침실3	RNW0720C2SP(거실) + RNW0320C2SP(침실1) + RNW0200K2SP(침실2)+ RNW0200K2SP(침실3)	
	가변형벽체 미설치	옵션1	거실+침실1	RNW0720C2SP(거실) + RNW0320C2SP(침실1)	
		옵션2	거실+침실1+침실2	RNW0720C2SP(거실) + RNW0320C2SP(침실1) + RNW0200K2SP(침실2)	
59B	가변형벽체 설치	옵션1	거실+침실1	RNW0720C2SP(거실) + RNW0320C2SP(침실1)	
		옵션2	거실+침실1+침실2	RNW0720C2SP(거실) + RNW0320C2SP(침실1) + RNW0200K2SP(침실2)	
		옵션3	거실+침실1+침실2+침실3	RNW0720C2SP(거실) + RNW0320C2SP(침실1) + RNW0200K2SP(침실2)+ RNW0200K2SP(침실3)	
	가변형벽체 미설치	옵션1	거실+침실1	RNW0720C2SP(거실) + RNW0320C2SP(침실1)	
		옵션2	거실+침실1+침실2	RNW0720C2SP(거실) + RNW0320C2SP(침실1) + RNW0200K2SP(침실2)	
84	기본형	옵션1	거실+침실1	RNW0720C2SP(거실) + RNW0320C2SP(침실1)	
		옵션2	거실+침실1+침실2	RNW0720C2SP(거실) + RNW0320C2SP(침실1) + RNW0200K2SP(침실2)	
		옵션3	거실+침실1+침실2+침실3	RNW0720C2SP(거실) + RNW0320C2SP(침실1) + RNW0200K2SP(침실2)+ RNW0200K2SP(침실3)	

• 평형별 각 실에 따라 설치되는 모델명은 상이하오니, 자세한 내용은 평형별 및 타입별 옵션 계약서를 참고하시기 바람. • 품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의 도산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동질, 동가 이상의 다른 제품으로 변경 시공될 수 있음.
• 상기 타입별 공사비 산정 시 주택형별 면적에 따른 실외기 용량 차이로 인해 금액 차이가 발생함. • 타입별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공사비는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미선택 시 적용되는 매립냉매배관 2개소의 공사비를 제외한 금액임.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선택 시 거실+침실1 매립냉매배관(벽부형)은 시공되지 않으며, 판매가격 산정 시 해당금액은 감액하여 반영하였음.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선택 시 설치되는 실외기에 스탠드형 및 벽걸이형 에어컨을 연결하여 가동할 수 없음.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의 설치 위치는 타입별로 차이가 있음.(실외기는 실외기 공간에 설치)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은 냉방 전용제품으로 난방운전이 불가하며, 운전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설치로 인하여 우물천장의 크기와 깊이, 에어컨 설치부위의 천장높이가 변경될 수 있음.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위치는 등기구 위치 및 기타 시공여건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음.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리모컨은 실내기 1대당 1개가 제공됨.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실외기는 선택한 실내기 소요 용량에 맞는 제품이 설치됨.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미선택 시 천장형 에어컨 냉매배관 및 드레인은 설치되지 않음. • 세대 내 기본설치품목인 에어컨용 냉매매립배관은 거실 및 침실1에만 설치되며, 거실은 스탠드형, 침실1은 벽걸이형 기준으로 설치됨.(단, 입주자 추가선택품목인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을 옵션으로 계약할 경우 기본설치품목인 에어컨용 냉매매립배관은 시공되지 않으며,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가격 산정 시 해당하는 설치비용은 감액하여 반영하였음.)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은 타입별 옵션선택내에서만 신청 가능하며 부분적인 선택은 불가함.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은 세대별로 택하여 계약하는 추가선택품목으로 분양가에는 미포함 되어 있으며, 분양주택 공급계약 시 별도의 계약을 체결해야 함. • 공급계약 체결시기 이후에는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신청 및 변경은 절대 불가함.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선택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취소하는 경우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시행자(건설사)에 귀속되며, 원상회복 또는 변경 공사를 위한 추가 비용을 부담하여야하며, 해당 세대는 건축공정상 기본설치품목인. 에어컨용 냉매매립배관(거실 및 침실1)이 설치되지 않음. • 상기 추가 선택품목 금액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 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음.

(3) 바닥재 마감 선택(84㎡ 해당)

구분	공급가격	계약시	잔금
폴리싱 타일	2,200,000	1,000,000	1,200,000

(4) 추가 선택품목 유의사항
• 공동주택 공급계약과 별도로 사업주체가 추가선택품목 계약을 진행할 예정이며, 납부금액 및 시기는 변동될 수 있음. • 추가선택품목 공급금액에는 공동주택 분양금액과 별도로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임.
• 상기 추가 선택품목은 발코니 확장형 세대만 선택 가능하며, 주택형별로 별매품 설치 후 변경되거나 삭제되는 부분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추가선택품목 공급금액에는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입주 시 개별 납부)
• 추가선택품목의 계약내용, 납부일정 및 납부방법은 시공사가 적의 조정한 추가 선택품목 공급계약서에 준함.

(5) 옵션선택 공사비 납부계좌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옵션 선택품목 공사비	광주은행	1107-020-432248	(주)이지앤프라임

■ 공동주택 마이너스 옵션

(1) 공통
• 「주택법」 제 54조 제1항 제2호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의 규정에 의거 사업주체가 제시하는 기본 마감재 수준(장판, 벽지, 조명, 위생기기, 타일, 창호, 가구, 주방가구 등)에서 입주자가 직접 선택 시공할 품목의 가격을 제외한 금액으로 공급받을 수 있으며, 마이너스 옵션 품목은 입주자 모집공고시 제시된 마감재 품목과 금액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가 정한 기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단, 개별품목 선택은 불가함)
• 본 주택은 국토교통부의 「동별 배정순서에 의한 기본선택품목제도 시행시 입주자 선정절차」 중 당첨자선정 발표 시 동 · 호까지 배정한 후, 당첨자가 계약체결시 해당 동 · 호에 대하여 기본선택품목을 선택하여 계약 체결하는 방식을 채택하였음.

(2) 마이너스 옵션 적용품목

품목	마이너스 옵션 선택시 시공되지 않는 품목	마이너스 옵션 선택시 기본공급 품목
바닥재	〈강마루(걸레받이 포함)〉 거실, 주방, 식당, 복도, 침실 〈타일, 디딤판〉 현관, 〈타일〉 발코니, 실외기실, 대피공간 바닥	각실 바닥 콘크리트노출 마감, 각실 바닥 난방(거실, 주방, 복도, 침실), 발코니바닥 방수, 발코니바닥 배수슬리브
벽, 천정	벽지(도장) 및 천장지, 벽 및 천장 도장(발코니, 대피소, 실외기실), 거실아트월, 주방벽타일, 몰딩, 우물천정 인테리어 마감	벽 : 단열+석고보드 또는 미장 또는 콘크리트면 처리 천장(천장틀, 석고보드), 커텐박스
조명기구	조명기구 일체	배관, 배선(콘센트, 스위치)
욕실	타일(바닥, 벽), 천정재, 석재(인조대리석선반 등), 재료분리대, 욕조하부틀, 코킹, 욕실환풍기, 스위치, 콘센트, 욕실폰, 도기, 수전금구류, 욕실장, 샤워부스, 욕실문, 욕조, 양변기, 세면기, 수전류, 도기류, 액세서리류	방수(바닥, 벽체), 설비배관(급수, 급탕 등 매립배관), 욕실 배기덕트, 바닥배수 슬리브, 전기 · 통신배관 배선
주방가구	주방가구 : 상, 하부장(상판 및 액세서리 포함), 주방TV, 벽타일, 주방수전, 싱크볼, 냉장고장, 주방키큰장, 팬트리장, 아일랜드주방, 리프트업 도어, 1구쿡탑(해당세대), 가스쿡탑, 렌지후드	설비배관, 렌지후드(자동식 소화기 설치관련) 전기 · 통신 배관/배선(주방TV폰 등의 전기입선), 주방 배기덕트
가구 및 기타사항	신발장, 아트월, 세탁실 및 발코니수전, 침실붙박이장, 주방냉장고장, 화장대 인테리어판넬(가구판넬, 도배판넬), 접이식 2단선반	월패드, 각실 온도조절기, 에어컨 냉매배관(거실, 침실1)
창호	창호(각 침실 및 욕실 문틀, 목문짝, 목문손잡이 및 경첩 등 하드웨어 일체, 문선), 실외기실 창호	목창호 가틀, 문틀사춤, 플라스틱 창호내창, 현관 방화문, 디지털도어락, 주방 발코니 목창호, 대피공간도어, 실외기실 도어

(3) 마이너스 옵션 금액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59A	59B	84	비고
금액	19,331,000	19,364,000	27,193,000	

(4) 마이너스 옵션선택 및 시공을 위한 유의사항
• 마이너스 옵션은 설계상 포함된 기본형의 마감재 중 선택품목에 해당하는 공사비를 제외한 가격으로 공급받고 입주가가 취향에 맞춰 직접 선택 시공하는 방식임.(단, 상기 마이너스 옵션 계약은 품목별,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일괄로 선택하여야 함.) • 배선기구류 위치 등은 기존위치와 동일하며, 기타 시공조건(마감재를 제외한 바닥, 벽체두께 등)은 타입별 마이너스 옵션 미 선택 시 기준으로 시공됨. • 분양계약 이후에는 자재 발주 문제로 인하여 마이너스 옵션의 추가 신청 및 변경이 불가함. • 마이너스 옵션계약세대는 발코니 확장공사 신청이 불가함으로, 이점 반드시 확인하신 후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하시기 바람. • 마이너스 옵션 부분의 각 세대별 공사는 사용검사 완료 및 잔금납부 이후 공사가 가능하오니 이점 감안하여 옵션선택 및 입주계획을 세우시기 바라며, 공사기한은 소음, 분진 등의 문제로 입주지정개시일로부터 60일 이내까지 관련 법규정을 준수하여 기본 선택품목(마이너스 옵션)의 시공 및 설치를 완료하여야 함.
• 기본형 계약 이후 마이너스 옵션 부분의 공사비가 건설산업기본법과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금액(일천오백만원)을 넘는 경우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며, 그 외의 경우도 품질확보 및 하자보수 책임과 사후관리를 위하여 자격을 구비한 전문건설업체가 시공하여야 함. • 하자 등으로부터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등록된 실내건축공사 업자가 시공을 하더라도 하자이행보증보험가입여부를 확인하고 계약서 작성 후 공사 착수하시기 바람.
• 마이너스 옵션 부분 공사 시기 시공된 소방, 통신, 전기, 설비시설 및 방수, 단열, 미장시설 등 기타 기 시공시설물 훼손시에는 원상복구 및 배상의무가 계약자에게 있음. • 마이너스 옵션 부분에 사용하는 자재는 「건축법」 제52조, 「건축법 시행령」 제61조, 「건축물의 피난 ·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규정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함. • 마이너스 옵션 품목의 시공에 대한 하자발생 및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위반으로 인한 일체의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음.
•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하여 계약 체결한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으로 하자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기존의 시행자 시공분 시설은 적법한 감리 감독을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본 아파트 사업주체에게 일방적으로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 책임에 따라 원인규명 의무는 계약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 마이너스 옵션과 발코니 확장 계약의 경우 공사상 상이점(바닥마감, 벽체, 벽지, 방수, 단열 등)으로 인하여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하여 계약하신 세대는 발코니 확장공사(별도품목 시공) 신청이 불가함.(마이너스 옵션 신청 이후 계약사항의 변경이 불가하오니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람.) •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세대 내 서비스 제공 품목은 시공되지 아니함. • 마이너스 옵션은 별도 동을 지정하지 않으니, 마이너스 옵션 선택을 희망하실 경우는 당첨된 동 · 호수에 마이너스 옵션이 적용된 분양금액으로 공급계약을 체결하셔야 함. • 마이너스 옵션 세대의 동이 지정되어 있지 않아 입주 후 인테리어 공사로 인하여 소음 및 분진이 발생할 수 있음. • 마이너스 옵션 계약세대는 계약 시 기본선택품목(마이너스 옵션) 시공, 설치 관련 확약서를 작성하여야 함. •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한 계약자의 분양금 납입비율은 일반분양 계약자와 동일함. •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렌지후드가 설치되지 않으며, 입주자가 설치할 렌지후드는 소방법에 의거 자동식 소화기가 포함된 제품이어야 함. • 마이너스 옵션 선택시에는 발코니 확장 계약을 할 수 없음.

Ⅶ. 기타

■ 주택소유에 의한 유의사항

•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함. • 주택매매 등 처분 사실은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등기접수일(미등기 주택은 건축물 관리대장 등본상 처리일)기준임. •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지분 소유자 전원이 주택소유자로 인정되며, 주택 면적은 지분 비율만큼이 아니라 전체 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함. • 주택은 전국에 소재하는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아래의 주택소유 여부 검색 대상에 포함된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포함됨.
•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판명내용이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사업주체가 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7일)내에 '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하시어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 검색대상 : 신청자와 그 세대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에 한함] 및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와 그 세대원[직계존비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에 한함] 전원[일반공급의 경우이며,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포함)]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 등본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간주함) – 주택처분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①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등기접수일 ② 건축물대장 등본 : 처리일 ③ 기타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인이 되어 있는 서류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함 ①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⑤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는 제외한다. ⑥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 시에는 유주택자로 봄) ⑦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⑧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무허가건물의 의미 : 2006.5.8 이전 「건축법」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주택(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으로 해당 지자체로부터 발급받은 무허가건물확인원 등을 제출하여야 인정함.

■ 소형 · 저가주택 1호를 보유한 경우의 특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가목2)

• 전용면적 60㎡ 이하이며, 주택가격이 8천만원(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인 1주택(소형 · 저가주택) 소유에 대해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분은 민영주택에 일반공급으로 청약하는 경우에 한해 소형 · 저가주택 보유기간을 무주택기간으로 인정함.
※ 주택공시가격 적용기준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이하 "주택공시가격"이라 한다) 중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르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처분된 경우에는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의한 민영주택의 일반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40조, 제41조, 제46조 특별공급 제외)시 적용함.

■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명단관리(「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제52조 제3항 및 제57조 제8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제58조 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전산관리지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 전산관리지정기관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전산관리하고 제57조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결과를 통보할 때 착오기재 소명 여부를 표시하여 통보하여야 함.
• 착오기재를 소명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3개월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다)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8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본다. 다만, 제57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1. 같은 순위(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2.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제52조 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청약 및 계약관련 유의사항(경과기간 및 요건 등)

•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최초 청약 전까지 신청 가능 주택규모(전용면적 기준)를 선택하여 정하여야 함. • 신청가능 전용면적 변경 요건 – 청약예금(청약부금은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전용면적 85㎡이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분에 한함)에 가입하여 예치금액 변경 즉시 전용면적 변경이 가능하며, 이 경우 예치금액은 현행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변경하여야 함. – 신청가능 전용면적 변경한 자 신청요건 ① 주택규모를 변경한 분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 가능(단, 공고일 이후 변경한 경우 변경전 전용면적으로만 신청가능) ②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분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가능
• 주택공급 신청서상 단말기로 인자된 거주지역명을 주민등록표상 거주지역명과 반드시 대조확인하시기 바람.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날인 없이 신청인 [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고,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하여야 함. • 주택소유로 보지 않는 경우 등 주택소유관련 유의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확인하시기 바람. • 본 아파트의 당첨자는 향후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하는 주택에 청약할 경우 1순위 청약이 제한될 수 있음. • 선순위 청약접수결과 일반공급 세대수를 초과하더라도 예비입주자 선정비율(일반공급 세대수의 40%)에 미달할 경우 차순위 접수를 받을 수 있으므로 청약신청전 청약경쟁률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분양일정(당첨자발표일 기준)이 동일한 2개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는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 시는 청약 모두 무효 처리함. • 순위내 청약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후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및 2순위 당첨자 포함)에는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신청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주택공급신청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나 정정은 할 수 없음.
• 당첨 및 계약 체결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및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반될시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일방적으로 해약이 가능함.

■ 기타 유의사항(반드시 확인하시어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신청서의 [주택형] 또는 [형]란은 평형으로 기재하지 말고 입주자모집공고상 [주택형(㎡)]으로 기재하여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람.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평형 대신 넓이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람. • 2009.4.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으로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 공급면적(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기준에서 주거전용면적만을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며, 당사는 주택형 오기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음. • 주택규모의 표시는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현하였으며, 연면적과 전체 계약면적과는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음. • 당첨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당사에 즉시 서면(주민등록등본 포함) 통보하시기 바람. • 계약체결 후 해약하게 되는 경우 분양공급계약에 따라 위약금을 공제 및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함. •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음(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택지준공 등 택지준공과 연동하여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 등기와 대지권 등기를 별도로 이행 하여야 함) • 입주예정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함.
• 본 아파트의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 공동주택 세대별 대지지분은 공동주택 총 대지지분을 계약면적에 따라 배분하였음. • 실 대지 측량 결과, 관련법규의 변경, 인 · 허가의 변경, 사업승인변경 및 신고, 대지지분 정리 등에 따라 본 계약 물건의 견본주택(모델하우스), 단지배치, 단지내도로 선형, 조경(수목, 수경, 시설물, 포장 등), 동 · 호수별 위치, 각종 인쇄물과 모형도 상의 구획선, 단지 내시설물의 위치, 설계도면 등의 표시, 대지지분 및 분양면적 등이 계약체결 이후 일부 조정될 수 있으며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세대당 공급면적 및 대지지분은 인허가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실제 등기시 공급면적과 대지지분이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증감이 있을 때에는 공급가격에 의해 계산하여 소유권 이전등기시까지 상호 정산하기로 함. 단, 소수점 이하 면적변동 및 이로 인한 지분 변동에 대해서는 상호 정산하지 않기로 함. • 대지인접도로 또는 단지내외도로와 단지내 비상차로, 차량 진출입구 등에 인접한 저층세대에는 차량 소음, 자동차 전조등에 의한 사생활권 등의 각종 환경권이 침해 될 수 있음. • 본 아파트 각 시설의 명칭 및 내용은 인허가과정, 법규변경, 현장시공 여건 및 상품개선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계약서 상의 유의사항을 필히 참고하시기 바람. • 견본주택(모델하우스)은 분양 후 일정기간 공개 후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평면설계 및 마감자재 등을 촬영, 보관할 예정임.
• 견본주택의 전시품 및 연출용 시공부분, 카탈로그, 팜플렛 등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시설물의 위치, 규모 및 색채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 심의결과에 따라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공급안내문 및 카탈로그 등 인쇄물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 및 현장을 방문하시어 사업부지 및 주변환경, 개발계획을 확인하고 청약 및 계약을 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견본주택에 설치된 감지기, 유도등, 스프링클러헤드의 위치 및 개수는 본 공사 시 소방법에 맞추어 설치됨.
• 견본주택에 설치된 환기유니트, 환기디퓨져, 온도조절기 및 바닥배수구의 제품사양 및 위치는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 견본주택에 설치된 조명기구, 콘센트, 스위치의 제품사양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 견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어 있으므로(본 시공시 발코니 확장 및 확장시 포함품목은 별도 계약 사항임) 기본형세대 선택시 제외품목이니 기본품목 등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목창호류, 가구류, 바닥재 등 마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문양(패턴) 등은 실제시공시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 할 수 있음. • 견본주택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제시된 견본주택에 시공되는 제품은 자재품절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 동급이상의 다른 제품 또는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인승, 속도, 탑승위치 등)은 사업계획승인도서에 따르며, 이로 인해 시행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견본주택에 설치된 단지모형 및 단위세대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견본주택 비치 도면 확인 필요), 대지 주변현황(현장 확인 의무), 공사시 필요한 설비기기 및 출입문 등은(견본주택 비치 도면 확인 필요) 표현되지 않음. • 견본주택 단위세대 내부에 설치된 인테리어 소품가구, 디스플레이 가전제품, 기타 전시용품 등은 제공되지 않음. • 견본주택 내에는 분양가 포함 품목과 플러스옵션 품목, 전시품목 등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으므로, 본 공사시에는 전시품은 시공 · 설치되지 않으며, 청약 및 계약 전에 견본주택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견본주택 내 건립세대, 주민공동시설, 카탈로그 및 각종 홍보물에 표현된 디스플레이용품 등은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으며 단지 모형의 조경, 차 · 보도선형, 위치, 거리, 폭, 식재, 주변 도로 및 부지 고저차 등은 실시 설계 후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 사이버 견본주택의 VR동영상은 견본주택을 촬영한 것으로 마감재 이외에 디스플레이를 위한 전시상품이 포함된 VR동영상이므로 청약 및 계약 전에 견본주택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시거나 사이버 견본주택의 전시품목을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람. • 이 아파트는 실입주자를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자격 등의 내용본조 등의 행위로 주택공급질서를 어지럽힐 경우에는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됨. • 당첨자는 계약 체결전 견본주택 및 현장사무실에 비치된(필요시 방문하여 확인) 사업승인도면 등 현황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음. • 청약신청 및 계약장소에서 발생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업체, 부동산중개업자 등의 영업행위)는 당사와 무관한 사항임. • 일부세대의 경우에는 고품질의 시공을 위해 공사진행 중 샘플하우스로 이용 및 관람될 수 있으며 해당 세대는 당사에서 임의로 선정함. 이는 공사상 수반되는 정당한 사유이므로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입주 시 입주자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공용부분(주거공용 제외) 및 복리시설 중 일부를 입주지정기간 시작일로부터 6개월간(필요에 따라 연장 가능) 입주 지원을 위한 업무시설로 사업 주체가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용료 등을 요구할 수 없음. • 입주 개시일로부터 3년간 입주자들의 편익 증진을 위해 공용부분(주거공용 제외) 및 복리시설 중 일부를 하자보수를 위한 업무시설 및 하자보수용 자재 보관 장소로 사업주체가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용료 등을 요구할 수 없음. • 본 아파트의 공사 중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천재지변, 문화재 발굴, 노동조합의 파업, 태업 및 전염병 발생,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가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보상금이 발생하지 않으며 입주지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마감자재의 내용은 형별, 타입별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본 계약은 동일 평면이지만 견본주택과 달리 평면이 좌우 대칭될 수 있으니 계약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전후면 발코니 및 콘크리트 난간 높이는 동 위치 및 층수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실제 시공 시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인접세대 및 동일세대 내부 각 부위별 확장여부에 따라 동일한 평형이라도 추가단열공사로 인해 발코니 벽체 두께가 상이하여 실사용 면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발코니 확장 선택이 가능한 발코니에는 비확장 시에도 별도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음. • 실외기실은 결로방지 단열재가 설치되지 않으므로, 내 외부 온도 차에 의하여 결로 및 결빙으로 인한 마감재 손상이 있을 수 있음. • 당해 사업에 사용된 사업주체의 브랜드 등은 향후 회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선수금이 부과됨. • 본 아파트의 공급가격은 각 세대의 주택형별, 층별 등의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주택형별 공급금액의 상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 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음.
• 계약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사업주체, 금융기관, 시공사 등에서 계약관리 및 추후 주요일정 통보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음.(계약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징구)
• 대지경계 및 면적은 택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등으로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준공시 대지경계 및 지적 확정에 따른 대지면적 정산 처리시 입주자는 동의 하여야 함.
• 외국인이 국내 토지를 취득할 경우 – 국내 거주 외국인이 주거목적의 국내 주택 구입시, 외국인토지법에 의거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토지취득신고를 해야 하며 국내 미거주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취득시, 외국인토지법에 의한 토지취득신고, 외국환거래법상 부동산 취득신고를 해야 하고, 영리목적 법인의 국내 설립 후 토지 취득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마치고 토지취득신고를 한 후 국내 토지를 취득하여야 함.

Ⅷ. 설계 유의 사항

▣ 택지지구 여건 및 단지 외부여건

• 원주 지식기반형 기업도시내 기반시설(도로, 상 · 하수도, 공원 등)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관계없이 전적으로 (주)원주기업도시, 해당 지자체가 설치하는 사항으로 개발계획 변경 등으로 사업추진 중 일부 변경 · 취소 · 지연될 수 있으며 향후 차기 인허가 승인 사항이 변경될 수 있음.(이에 따른 당 사업지의 설계상의 일부 변경사항이 생길 수 있으며, 미확인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이 경우 입주시기 지연 등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자는 귀책사유가 없음. • 당해 지구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주)원주기업도시로서 향후 택지지구내 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최초 개발계획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본 주택은 (주)원주기업도시에서 시행하는 택지개발지구에 속한 구역에 건축됨에 따라 택지개발사업 준공시까지 대지지분 소유권이전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공유대지에 대한 지적공부정리가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소유권이전 등기시 대지 공유지분은 약간의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음. • 당해 지구의 토지이용계획은 개발(실시)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등으로 사업추진과정에서 변경 · 조정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주택건설 사업계획이 변경될 수 있음. • 당해 지구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한 각종평가(사전환경성 검토,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교통영향분석 · 개선대책) 내용 중 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한 사항은 변경될 수 있음. • 당해 지구는 사업진행지구이며 현재 공사중으로 입주 후 주변단지 등의 공사로 인한 소음, 비산먼지, 공사차량 통행, 교통장애 및 생활여건시설 미비 등에 따른 불편을 감수하여야 하며, 당해 지구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의하여 설치되는 도로, 공개공지, 공공조경, 공공보행통로 등 개설로 인하여 발생되는 소음, 기타 외부인 통행 등에 대하여 입주자는 일체 이 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광역도로 등 일부 광역교통망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계획하여 진행하는 사항으로 일부 변경 및 취소, 개통지연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사는 귀책사유가 없음. • 사업부지 주변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사항은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결정되므로 도로 폭 등의 사항이 다소 변경되어질 수 있음. • 당해 지구 내 및 인근의 신설 · 확장 도로는 인 · 허가 추진일정 및 관계기관의 사정에 따라 개설시기 등이 변경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사업부지 주변 아파트 및 건축물의 신축 · 개조 등의 건축행위, 주변 시설물의 변경 등으로 현재와 다르게 단지 내 아파트 동별, 향별, 층별 위치에 따라 소음, 일조, 조망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이 침해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한 사항으로 관할관청 등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람. • 학교설립계획의 변경으로 인하여 당해 지구 내 학교부지가 취소 및 위치 · 면적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당해 지구 내 학교 등 교육시설의 설립 등은 개발(실시)계획의 변경, 해당 관청의 학교설립시기 조정 및 설립계획 보류(취소), 학생 수용여건변화 등에 의해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설립계획 및 학생수용계획은 향후 공동주택 입주 시기 및 학생 수 등을 감안하여 해당 관청에서 결정하는 사항임. 이에 교육시설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당사와 무관하므로, 관할교육청 등 해당 관청에 반드시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람.
• 해당사업으로 인해 유입되는 학생들은 (가칭)기업초등학교2 개교 이전까지 (가칭)기업초등학교(2019.3.1. 개교 예정)에 배치할 예정이며, 해당공동주택 입주로 인한 학생들의 원활한 등하교를 위하여, (가칭) 기업초등학교 2 및 (가칭) 기업중학교 개교 전까지, 인근학교((가칭)기업초등학교, 치악중학교, 지정중학교 등)까지 이동수단(셔틀버스 25인승 1대 초등학교, 중학교 개교시까지 등,하교시간)을 통한 통학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며, 운영방법은 입주대표회의에서 자율적으로 정하여 시행하며, 원주 지식기반형 기업도시 개발계획은 예정사항으로 향후 시행자및 원주시 교육청 여건에 따라 학교 위치 및 개교시점이 변경 · 조정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여야 함. • 본 사업부지 외부의 공원, 경관녹지 등은 현재 상황 및 계획을 보여주는 것으로 당사의 시공 범위가 아니며, 관련사항은 (주)원주기업도시, 지자체 관할이므로 당사와 무관함. • 단지 진출입 공간을 제외한 보행자 전용도로와의 경계부에는 담장 또는 난간이 설치 될 수 있음.
• 원주 지식기반형 기업도시 내 하수처리장(1), 폐수처리장(1), 가스충전소(1), 주유소(2), 산업용지, RDF발전소(중부발전), 철탑 등이 위치할 예정으로, 조망권 등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 며, 자세한 사항은 원주 지식기반형 기업도시 개발계획 승인서를 통하여 확인 바람. • 원주 지식기반형 기업도시 내 골프장은 (주)원주기업도시에서 계획한 것으로 골프장부지가 변경되거나 골프장 조성계획의 취소, 타 시설로의 변경 등의 사정이 발생할 수 있음을 사전에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람. (주)원주기업도시의 계획 변경 등은 당사와 무관함. • 당해 지구 내 근린생활용지, 학교용지, 사회복지시설, 공공용지, 상업용지, 주택용지, 주유소용지, 주차장용지, 공원 및 녹지 등에서 발생될 수 있는 환경(간섭, 소음) 오염 및 유해시설 등은 공동주택 주거환경에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계약자는 현장 등을 확인한 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서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음.
• 본 단지공사 외에 원주 지식기반형 기업도시의 공사진행 및 시설운영과 관련하여 소음, 먼지, 악취 및 사생활 침해, 기타 외부인 통행 등이 발생될 수 있으며, 입주자는 이에 대해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경계의 경사로, 조경석, 완충녹지의 높이 및 기울기, 식재계획 등은 본 공사시 변경될 수 있음. • 본 공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당해 지구내 공공시설 및 기반시설의 위치, 주변 혐오시설 유 · 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냄새유발시설, 주변개발 등 주위 환경에 대해서는 청약 및 계약 전에 견본주택 및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여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계약자의 미확인 등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각종 광고 · 홍보 유인물(사이버 견본주택, 홍보 카탈로그, 홈페이지 안내문 등)에 표시된 각종 시설(학교, 도로, 공공용지 등) 등 개발계획은 각각의 개발주체가 계획 · 추진 예정중인 사 항을 발췌 · 인용한 것으로서 국가 또는 해당기관의 정책 등 사정에 따라 현재의 계획 및 예정사항이 향후 변경, 취소, 지연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여건

• 분양 관련 팸플릿,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단지배치도, 이미지컷 등 각종 홍보물(분양 카탈로그 등) 및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형도상의 단지내 커뮤니티시설의 내부구조 및 시설물에 대한 인테리어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특히, 홍보물 등에 표시된 실내가구나 운동시설은 실제 설치 · 시공되지 않음). • 원주시의 인허가조건[사업계획(변경)승인,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건축심의조건 등 포함]에 따라 단지 내 · 외의 도로(인도, 차도, 자전거도로 및 비상차량동선 등), 부대복리시설, 주민운동시설, 어린이놀이터, 주민휴게공간 등의 선형, 위치, 크기, 모양 및 대지경계선형과 같은 사항은 변경 시공될 수 있음. • 단지 마을 명칭 및 동 번호는 관계기관의 심의 결과 준수 및 단지별 구분을 위해 입주시 공급시의 명칭과 상이할 수 있으며, 추후 변경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아파트 및 기타 건축물의 외관은 관할관청의 이미지개발에 따른 고유 마을명칭, 경관계획(야간경관조명 포함) 및 색채계획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부대복리시설은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및 운영을 하여야 하며, 법적으로 설치가 의무화된 품목만 시공되고 제공집기 및 마감재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부대복리시설의 디자인, 캐노피, 지붕형태 등은 당사 특화계획에 따라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음. • 단지내 주민공동시설은 분양시 제시한 기능으로 적용되고 설계변경을 통해 일부 실 배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향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주민공동시설의 운동시설은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체육시설업"(영리를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 경영하는 업)으로 운영할 수 없음. • 인접 동 및 인접세대에 의해 각 세대의 배치에 따라 조망과 향, 일조량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견본주택에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함. • 건축법 및 주택법을 준수하여 시공한 인접 건물에 의하여 조망권 및 일조량이 감소될 수 있음. • 본 아파트는 단지 배치상 동별, 향별, 층별 차이 및 세대 상호간의 향 · 층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및 사생활권이 침해당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단지 배치상 지형의 단차로 인해 옹벽설치 구간과 해당 동별 이격거리를 제시하며,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및 사생활권이 침해당할 수 있으므로 이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경관조명 등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 · 보수 · 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공용조명, 단지 홍보용 사인물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함. • 본 단지는 별도의 정화조가 설치되지 않으며, 단지 내 오수관로는 외부 차집관로와 직접 연결하는 형태로 공사가 진행될 예정임. • 단지 외부와의 레벨차로 인한 옹벽 또는 조경석으로 설치될 수 있으며, 저층부 조망권 및 일조권이 침해될 수 있음. • 주동 옥탑 및 측벽에는 조형물 및 경관조명등이 설치될 수 있어 최상층 세대의 조망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운영 · 유지 · 보수 등에 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함.
• 아파트 대지 내에 설치되는 법면은 입주자의 재산으로서 준공 후 별도의 유지관리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함. • 주동 저층부 마감은 석재 및 스톤코트 등으로 마감 적용 예정이며 당사의 특화 디자인 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커뮤니티, 어린이집, 경로당 등의 실외기는 외부에 설치되며 소음, 진동, 수증기가 발생될 수 있음 • 근린생활시설 전면 바닥레벨은 경사처리 예정이며, 향후 본공사시 변경될 수 있음 • 주동 색채 및 옥외시설물은 향후 경관심의 지침변경 및 인허가 과정 중 입주자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음. • 단지주변도로, 단지내차로 및 비상차로, 지하주차장 출입구, 단지주 · 부출입구에 인접한 저층세대는 차량소음 및 전조 등에 의한 각종환경권 침해가 있을 수 있음. • 주동 피트층 출입구 상부 캐노피는 설치되지 않음. • 입면 몰딩설치에 따른 입면 돌출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외부의 색채계획 및 경관조명 계획은 경관심의를 거쳐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쓰레기 분리수거 시설 위치 및 개소는 사업승인 도서 기준으로 시공되며, 본 공사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분리수거대, 자전거보관소 위치 및 설치규모는 공사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본 공동주택(아파트) 및 근린생활시설의 단지내에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함. • 단지내 근린생활시설은 별도의 분양시설로서 공동주택단지와 별도구획이 불가하므로 향후 각 대지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청할 수 없음. • 본 아파트의 난방은 개별난방 방식임.
• 단지 차량 출입구는 원주기업도시 지구단위 지침 및 교통영향 평가를 반영하여 남측에 1개소(지하출입구는 지하 1층 출입구 1개소, 지하 2층 출입구 2개소 구분) 설치되어 있음. • 단지내에 공동주택(아파트)은 지하주차장이 설치되며(지상주차장 있음), 근린생활시설은 별도 지상주차장이 설치됨. • 각 동별 지하주차장 여건에 따라 인접한 주차대수가 상이할 수 있음. • 각 동별 지하주차장 출입구는 주차장에 면하거나, 복도 형태로 연결되는 동이 있음. • 201, 202, 203동 남측 및 205, 206동 남측에 지하주차장 진출입 램프가 설치되며, 201, 202, 203동 남측 및 204, 205, 206, 207동 북측에 지상주차장이 설치되어, 차량통행에 의한 소음, 야간 조명에 의한 간섭이 발생될 수 있음. • 근린생활시설 및 지상주차장, 문주 등의 설치로 인접세대의 이용에 영향이 있을 수 있음. • 203동 남측에는 2층 규모의 근린생활시설이 위치하며, 지붕층에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될 수 있어 저층부 조망권 및 일조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소음 및 간섭이 발생될 수 있음. 또한 근린생활시설 후면에 근린생활시설 지상 주차장이 설치되어 이에 따른 소음 및 불빛 등의 간섭이 발생될 수 있음. • 201, 202, 203, 204, 205, 206, 207동 인근에 주민운동시설이 설치되어 있어 단지주민 이용에 따른 소음 및 간섭이 발생될 수 있음. • 202, 203, 204, 205동 인근에 어린이집이 설치되어 단지주민 이용에 따른 소음 및 간섭이 발생될 수 있음. • 205동, 206동 데크층에 주민복리시설(골프연습장, 피트니스, 작은도서관) 및 경로당이 설치되어 단지주민 이용에 따른 소음 및 간섭이 발생될 수 있음. • 201, 202, 203, 204, 205, 206, 207동 인근에 주민 휴게공간이 설치되어 단지주민 이용에 따른 소음 및 간섭이 발생될 수 있음.
• 각동 저층 세대는 단지 내 비상차로 등 법적 설치 시설에 따른 시각적 간섭 및 소음이 발생될 수 있음으로, 계약 전 이를 사전에 확인하여야 함. • 지상에 지하 기계/전기실 D/A, 지하 채광창, 부대시설 실외기 시설 등이 돌출되어 세대에 간섭이 될 수 있음. • 각 주동별 소방 급기용 D/A가 1~2개소 설치예정으로 일부세대 주방 후면 등에 설치되며, 크기 높이 등은 시공과정 중 조정될 수 있음. • 단지내 지하시설물 환기 및 채광을 위한 시설물(환기창, D/A, 주차장 썬큰)과 쓰레기 분리수거함 등이 일부 동의 전 · 후 · 측면의 지상에 설치될 예정으로 일부 세대에 주차장 배기 및 소음, 조망 저해 등이 발생 할 수 있음. • 단지 배치상 쓰레기(음식물, 폐기물 및 재활용 등)분리 수거시설과 인접하는 세대는 악취 및 해충 등에 의한 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근린생활시설 및 부대 복리시설의 냉방 관련시설(실외기) 등이 지상층 단지 외부로 노출되어 통행 및 세대간섭, 소음 및 진동 등의 불편이 있을 수 있으며, 시공과정 중 위치, 형태 및 수량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주변 도로의 경사도 및 대지의 레벨차이에 의해 본 단지에 레벨 차이가 있으며, 단지 내 도로의 경사도는 시공 중 주변도로의 경사도 및 레벨에 순응하기 위하여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상부는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될 수 있음. • 주 출입구를 제외한 보행 출입구는 현장상황 및 기반시설 설치계획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단지 내 · 외의 도로(인도, 차도, 자전거도로 및 비상차량동선 등), 부대복리시설, 주민운동시설, 어린이놀이터, 주민휴게공간 등의 선형, 위치, 크기, 모양 및 대지경계선형과 같은 사항은 변경 시공될 수 있음. • 단지 내 조경, 식재는 단지조화 등을 고려하여 설치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관계기관의 심의과정 또는 시공과정에 의한 설계변경 및 조경특화에 따라 조경시설물의 조성선형, 포장, 조경시설물의 색채, 형태, 재료,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음(단, 규격이나 수량의 변경이 있을시 당초 계획보다 동등 이상으로 시공됨). • 대지 주위의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사항은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결정되므로 도로 폭 등의 사항이 다소 변경되어질 수 있음. • 준공 전 · 후 개인 또는 임의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 내 · 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준공 전 · 후 최종 사업승인도면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함. • 타 지역의 타사 또는 당사 분양단지의 마감사양, 설치 부대편의시설 및 조경과 본 단지를 비교하여 견본주택 및 사업계획승인도서에 제시한 사항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변경)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분양 아파트와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에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람. • 단지의 현장여건 및 구조 · 성능 · 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 법규(건축법,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 · 허가를 진행할 수 있음. • 본 공동주택(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은 단지 배치상 동별, 향별, 층별 차이 및 세대 상호간의 향 · 층 등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및 사생활권이 침해당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단지 주출입구, 부대복리시설, 주차출입구, 상가동 건물 등 단지내 시설물 등에 의해 특정세대의 경우 일조권, 조망권 및 환경권 등이 침해될 수 있으며, 야간조명 효과 등에 의한 눈부심 현상이 발생될 수 있음. • 본 사업부지는 미술장식품 설치 대상지로 조경계획 및 미술장식품 디자인에 따라 설치위치 및 규모, 계획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단지내 조경, 동 현관, 지하 출입구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각기 다르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음.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의 외부 입면, 마감재는 색채, 입면 자문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계약 전 단지여건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에 의함. • 주동출입구, 옥상, 옥탑 조형물의 형태, 아파트 외관 및 색채는 특화계획 및 관련 인허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단위세대

• 공급계약체결 이후 계약자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은 불가함. • 견본주택 내에 시공된 제품은 다른 제품으로 변경될 수 없음. 단, 시공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자재의 품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의 도산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동질, 동가 이상의 다른 제품으로 변경 시공될 수 있음. • 세대별로 외부창호 형태 및 이에 따른 개구부 크기가 상이하므로 계약 세대별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거실 및 침실 등의 천장고는 실시공 시 바닥재의 종류에 따라 법정 허용한도 내에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음. • 옵션에 따라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타입, 배치 및 설치는 변경될 수 있으며 비건립세대의 경우, 평면에 따라 조명기구 수량이 차이가 날 수 있음 • 발코니에 설치되는 드레인 및 선홈통 위치와 개수는 변경 될 수 있으며 선홈통 배수관을 가리기 위해 벽체가 일부 돌출되어 설치될 수 있음. • 외부 창호의 단면크기, 프레임사이즈, 유리 두께와 외장재 등은 제조사 및 외부입면 계획 등에 따라 공사 시 일부 변경 될 수 있으며,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사양(유리, 창틀)이 일부 변경 시공될 수 있음. • 세탁기 등을 두는 발코니 및 보조주방의 경우 발코니 확장유무와 관계없이 비난방 공간임. • 욕실 문턱높이는 물넘침을 방지하기 위함이며, 욕실화의 높이와 상관없음.(문 개폐시 걸릴 수 있음) • 외벽 및 세대간 벽 등 단열설치부위의 결로발생으로 인한 하자방지를 위하여 동일한 주택형이라도 부분적으로 벽체구성 및 마감의 바탕이 일부 다를 수 있음. • 견본주택에 설치된 내 · 외부 창호는 본공사시 업체, 규격, 사양, 열림(개폐)방향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생활 가구류(침대, 소파 등), 생활 가전류(냉장고, 세탁기 등 일체)의 용량 및 규격에 따라 세대내 설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고, 계약 및 입주 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견본주택 내에 설치된 조명은 매립등을 제외한 대부분 노출등은 연출을 위한 조명으로 본 공사에 적용되지 않는 품목임. • 동일 주택형의 경우라도 단지 내 위치, 층수, 주변시설물 등에 의하여 세대 시야간섭, 일조량, 소음, 에너지소비량, 단열성능 등의 주거조건이 상이할 수 있음. • 동일 주택형의 경우라도 지하 출입구와 지하 엘리베이터 홀의 형태는 동별, 호수별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본 아파트의 서비스면적(발코니)은 실 시공 시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면적 증감시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내부 일반가구, 주방가구 등의 마감재 치수 변화가 있을 수 있음. • 타일줄눈위치 및 각 액세서리 위치는 형별, 타입별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견본주택 및 카탈로그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엘리베이터에 면한 세대의 경우 엘리베이터 운행으로 인한 소음, 진동 등이 발생될 수 있음. • 본 아파트의 난방방식은 도시가스 개별난방이며, 세대별 다용도실에 보일러가 설치되어 있음. • 수전이 설치되지 않은 발코니는 물청소를 위한 배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음. • 발코니에 도시가스 배관 및 계량기가 설치됨. • 가구(일반가구, 주방가구, 욕실장 등) 시공에 따라 안보이는 벽체, 바닥, 천정에는 별도의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천정도배, 벽체타일, 바닥마루판 등) • 현관 신발장, 주방가구, 붙박이장등 수납공간의 크기와 마감자재는 세대별로 상이하므로 반드시 확인하시고 추후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계약자가 사용 또는 희망하는 가전제품(냉장고, 세탁기 등 일체)의 용량 및 규격에 따라 세대내 설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고, 계약 및 입주 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전열교환기,수전,전기스위치 콘센트 등은 본 공사시 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 • 견본주택에 설치된 급/배기 디퓨저, 온도조절기, 바닥배수구, 점검구의 제품사양과 위치는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견본주택에 설치된 내/외부창호는 인허가 및 본시공 여건, 성능/기능/입면 개선, 풍동 시험결과 등에 따라 프레임 및 유리 두께, 색상, 크기, 개구부 위치, 규격, 재질, 형태 등이 다소 변동될 수 있음.
• 욕실에 설치되는 세면대, 좌변기, 욕조, 수전 등의 제품은 견본주택에 설치 또는 분양 자료에 표현된 제품을 기준으로 하되 추후 변동될 수 있음. • 단위세대 다용도실, 발코니, 수전위치, 바닥레벨, 천장마감은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실내습도 등 생활여건에 따라 발코니 창호 및 유리창 표면 등에 결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주기적인 실내환기는 결로 발생 예방에 큰 도움이 됨.)
• 세대내 실외기, 우 · 오수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각 타입별 서비스면적은 상이하오니,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천연자재(무늬목, 천연석재)는 자재 특성상 일정한 무늬나 색상의 공급이 어려우므로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 기준에 의함. • 목창호류, 가구류, 바닥재 등 마감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제 시공 시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할 수 있음. • 세대 간 경계벽은 「벽체의 차음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5-844호, 2015.11.25.) 제3조 성능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며, 입주 후 세대간 벽체에 소음원을 부착할 수 없으며 부착으로 인한 소음민원을 시행사 및 시공사에게 제기할 수 없음.

▣ 견본주택 유의사항

• 견본주택은 존치기간 만료 또는 제반 여건에 의하여 임의 철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평면 설계 및 마감재 등을 촬영, 보존 예정임. • 견본주택 및 각종 인쇄물과 모형도상의 구획선 및 시설물의 위치, 설계도면 등의 표시가 계약체결일 이후 사업계획 변경승인에 따라 일부 변경될 경우에는 시행사는 이를 분양계약자에게 통보해야 함. • 견본주택 및 홈페이지에는 기본품목, 별도계약품목 및 전시품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고, 본 공사 시에는 계약내용에 따라 시공될 예정인 바, 견본주택의 연출용 시공부분은 시행사에서 연출한 사항으로 실제로 시공 · 설치되지 않는 사항이며, 분양계약자는 사전에 견본주택을 확인 후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연출용 제시부분에 대하여 미확인으로 인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 견본주택은 확장형으로 시공되어 있으며, 기본형세대 선택 시 제외품목이나 기본품목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목창호류, 가구류, 바닥재 등 마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시공시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할 수 있음. •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어려운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속도, 탑승위치 등)은 사업계획 승인도서에 준하며, 이로 인해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든 모형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견본주택 내 건립세대 및 전시모형을 포함한 각종 홍보물의 가구소품, 디스플레이, 전시용품 등은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음.
• 견본주택의 연출용 시공부분 또는 카탈로그, 공급간지, 기타 홍보물에 사용된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조감도, 사진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당사에서 연출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사업승인도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견본주택, 인쇄물, 분양 홈페이지 등 각종 인쇄물에 표기된 각종관내시설(학교,관청,도로,철도,공원,상하수도,기타혐오시설 포함등) 및 일반건축물 등은 허가관청, 국가시책 및 사업주체의 계획변경 등에 따라 신설, 변경될 수 있음. • 견본주택에 시공된 마감자재는 자재특성상 본 시공 시 일정한 무늬나 색상의 공급이 어려우므로 실 시공된 마감자재와 상이할 수 있으며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의함.
• 견본주택에 설치된 스프링클러 헤드, 감지기, 유도등의 개수 및 위치는 견본주택 소방시설로 시공시 관련법규에 의거 변경 설치될 예정임.
• 견본주택 천정에 설치된 스프링클러 및 감지기와 벽체에 설치된 경보기 등은 견본주택 자체의 소방시설로서 본공사 시 위치와 사양 등이 변경됨.

▣ 친환경주택의 성능수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1호)

항목	적용여부	사양, 성능, 설치위치, 설치개수 등
고효율 기자재	적용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제품 사용
대기전력 차단장치	적용	거실, 침실, 주방에 대기전력차단콘센트 각 개소에 1개 이상 설치
일괄소등 스위치	적용	세대 내 일괄소등스위치 설치
고효율 조명기구	적용	세대 및 공용부위 조명기구 고효율 기자재 및 동등성능 이상 제품사용

항목	적용여부	사양, 성능, 설치위치, 설치개수 등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	적용	공용화장실에 자동점멸스위치 설치
실별 온도조절장치	적용	세대 내 각 실별 자동온도조절장치
절수설비	적용	세대 내 설치 수전류는 수도법 제15조 시행규칙 제1조의2, 별표2에 따른 절수형 설비 적용

▣ 감리자 및 감리금액

(1)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단위 : 원/부가가치세포함)

구분	건축감리	전기감리	소방감리	통신감리
회사명	(주)신한종합건축사사무소	(주)조은엔지니어링	(주)건창기술단	(주)건창기술단
감리금액	1,795,071,586원	426,393,533원	189,000,000원	1,000,000원

▣ 본 주택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득한 아파트임.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구분	보증서 번호	보증금액	보증기간
보증내용	2018-0561-00001097	111,281,450,000원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일로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 포함)까지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약관 중 보증사고,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이행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 분양보증 주요내용
○ 보증사고(보증약관 제4조)
① "보증사고"라 함은 보증기간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1. 주채무자에게 부도 · 파산 · 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한다. 이하 같다)보다 25퍼센트P 이상 미달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요하지 아니합니다.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 · 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 당해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한다)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까지를 말합니다.

② 보증사고일은 보증회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을 통지하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보증회사는 이 보증서에 기재된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한다)에 게재함으로써 통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 · 파산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접수일
※ 아파트 공사진행 정보 제공 :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보증채무의 내용(보증약관 제1조) : 보증회사는 주택도시기금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당해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보증회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주채무자】** 보증서에 기재된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분양이행】**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당해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 완료
【환급이행】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

○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등의 납부(보증약관 제2조)
① 보증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합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기타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 허위계약, 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대물변제】 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 약을 체결함으로써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위계약】 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융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대여하여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보증회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 · 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한다)에 납부하지 아니한 입주금. 5. 보증회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를 통보한 후에 그 납부중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보증회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초과하여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기타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 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 : 홈오토, 발코니새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기타 마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다만, 사양선택 품목과 관련한 금액이 보증금액에 포함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14.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기타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5. 주채무자 · 공동사업주체 · 시공자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 · 공동사업주체 · 시공자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 · 공동사업주체 · 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 · 공동사업주체 · 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대여받아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② 보증회사가 제6조에 의거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보증회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 통지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 통지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기재된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주택공급에관한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한다)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보증회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에 한하여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구분	상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주체	(주)이지앤프라임	200111-0409982

구분	상호	법인등록번호
시공회사	(주)라인건설	220111-0002659

▣ 견본주택 사이버모델하우스 : http://www.egthe1.co.kr/wonju2/

▣ 견본주택 위치 : 강원도 원주시 서원대로 181

※ 본 입주자 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당사 견본주택 또는 공급회사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분양문의 1855-3728